

2024년도

- 테마와 힐링이 있는 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

해수욕장 관리운영 계획(고시용)



강릉시
관광정책과

I. 운영 방향

1 목 표

2 운영방향

3 세부과제

목 표

테마와 힐링이 있는 “전국제일” 해수욕장 조성

운 영 방 향

세 부 과 제

"테마와 힐링"
차별화된 해수욕장 운영

- 대형 슬라이드, 해수풀장, 해상 위 물놀이 시설 설치
- 경포해수욕장 개장 조기추진
- 테마해수욕장(애견해수욕장) 운영
- 해수욕장 야간개장 및 성수기 수영시간 연장
- 비치비어 페스티벌, 썸머 페스티벌 등 축제와 연계한 해수욕장 활성화

"안전사고 Zero"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추진

- 24시간 종합상황실 체제 운영
- 해수욕장 인명구조 드론 운영
-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 안전장비 확충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 유관기관과 상호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구역별 단속용역을 통한 쾌적한 공간 조성
- 이안류, 유해생물 모니터링 및 대응
- 안전관리요원 전문교육·훈련 실시
- 상어퇴치기 운용 등 물놀이 안전 확보

"친절海 정직海 깨끗海"
이용객 불편 개선

- 조례개정을 통한 불법·편법요금 징수 방지
-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
-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및 시설 종합 개·보수
- 편의시설 카드결제시스템 의무 도입
- 해수욕장 수질·토양 검사 실시

II. 운영 개요

1 해수욕장 일반 개요

2 기본 현황

II. 운영개요

1 해수욕장 일반개요

① 운영기간

- 경포해수욕장: 2024. 6. 29.(토) ~ 8. 18.(일) / 51일간
- 경포 외 해수욕장: 2024. 7. 5.(금) ~ 8. 18.(일) / 45일간

② 개장시간

- 시범·일반해수욕장: 06:00 ~ 24:00
- 마을 해수욕장: 06:00 ~ 22:00

③ 수영 가능시간: 09:00~18:00

※ 야간개장(7.27.~8.10.): 경포해수욕장 21시까지, 그 외 해수욕장 19시까지

④ 운영대상: 18개소

구 분	개소	해 수 욕 장	비고
시범해수욕장	4	경포, 주문진, 정동진, 옥계	
일반해수욕장	4	사천진, 사근진, 강문, 안목	
마을해수욕장	10	영진, 연곡, 하평, 사천, 순긋, 송정, 등명, 남항진, 안인, 금진	

※ 자체 미개장: 도직해수욕장

⑤ 운영방법

- 경포해수욕장은 관광정책과, 기타해수욕장은 관할 읍·면·동 책임하에 운영
- 편의시설 위탁운영: 변영회·자치발전협의회 및 각 해수욕장운영위원회
- 관리본부 운영: 10개소

※ 경포, 주문진, 옥계, 사천진, 연곡, 정동진, 강문, 송정, 안목, 남항진

2 해수욕장 기본 현황

1] 해수욕장별 현황

해수욕장명	등급	관 리 청	소 재 지	백사장(해변) 조건		
				길이(m)	폭(m)	면적(㎡)
계		10개소	19개소	12,700	968	683,822
경 포	시범	관광정책과	안현동	1,800	70	107,300
주 문 진	시범	주문진읍	주문리	1,369	59	68,900
안 인	마을	강 동 면	안인진리	150	30	4,700
등 명	마을		정동진리	490	54	24,900
정 동 진	시범		정동진리	1,660	50	119,400
금 진	마을	옥 계 면	금진리	850	44	35,400
옥 계	시범		금진리	530	140	77,400
도 직	마을		도직리	330	56	17,100
하 평	마을	사 천 면	하평리	340	36	11,600
사 천 진	일반		사천진리	760	51	19,200
사 천	마을		방동하리	270	45	12,900
영 진	마을	연 곡 면	영진리	450	38	16,900
연 곡	마을		동덕리	750	43	25,800
강 문	일반	초 당 동	강문동	490	52	25,137
송 정	마을	송 정 동	송정동	270	46	10,900
안 목	일반		견소동	611	43	27,485
남 향 진	마을	성 덕 동	남향진동	350	47	32,400
순 곳	마을	경 포 동	안현동	400	36	14,400
사 근 진	일반		안현동	830	28	32,000

2 운영단체 현황

해수욕장명	운영 단체 명	대표자	연 락 처	비 고
계	18개			
경 포	강릉시 (관광 정책 과)			시직영
주 문 진	주문진해수욕장운영위원회			
안 인	안인해수욕장운영위원회			
등 명	등명해수욕장운영위원회			
정 동 진	정동1리해수욕장운영위원회			
	정동2리해수욕장운영위원회			
금 진	금진해수욕장운영위원회			
옥 계	옥계해수욕장운영위원회			
하 평	하평해수욕장운영위원회			
사 천 진	사천진해수욕장운영위원회			
사 천	사천해수욕장운영위원회			
영 진	영진해수욕장운영위원회			
연 곡	연곡해수욕장운영위원회			
강 문	강문해수욕장운영위원회			
송 정	송정해수욕장운영위원회			
안 목	안목해수욕장운영위원회			
남 향 진	남향진해수욕장운영위원회			
순 곳	순곳해수욕장운영위원회			
사 근 진	사근진해수욕장운영위원회			

III. 주요 추진계획

1 해수욕장 사전 준비

2 해수욕장 운영

Ⅲ. 주요 추진계획

1 해수욕장 사전 준비

① 해수욕장 운영 읍면동 예산 재배정

- 배정시기: (1차) 2024. 2. 15. (2차) 2024. 6. 11. (3차) 2024. 6. 26.(예정)
- 예산액: 2,835,103천원
- 배정과목: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일반보전금(식비)
- 배정방법: 읍·면·동별 운영계획서 작성 및 기타 기초·증빙자료 첨부신청, 타당성 검토 후 사업비 지원

② 해수욕장 편의시설 운영자 모집 및 선정

- 경포해수욕장: 지정위탁
 - 경포변영회, 경포자치발전협의회, 해안상가변영회 지정위탁
- 기타해수욕장: 매년 해수욕장운영위원회 선정
 - 읍·면·동장 주관하에 공개경쟁모집 등 자체 운영방식을 택하여 해수욕장운영위원회 매년 선정

③ 해수욕장 시설물 위탁운영 계약

- 위탁기간: 해수욕장 개장기간(경포 51일간, 기타해수욕장 45일간)
- 수탁자: 해수욕장운영위원회
- 위탁시설: 샤워장, 파라솔, 튜브, 주차장 등 해수욕장 편의시설
- 기타사항: 수탁자 사업자등록 신고필수, 카드결제시스템 의무운영
- 시범·일반해수욕장: 06:00 ~ 24:00

④ 해수욕장 관계자 회의

- 회의일시: 2024. 6. 13.(목) 14:00
- 회의장소: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본관 1층 대회의실

- 회의주제: 문화관광해양국장
- 참석인원: 50명
- 참석대상
 - 읍·면·동: 주문진읍, 강동면, 옥계면, 사천면, 연곡면, 초당동, 송정동, 성덕동, 경포동 해수욕장 담당 및 담당자, 시설수탁기관 1명
 - **유관기관:** 강릉경찰서(생활안전과장), 강릉소방서(대응총괄과), 속초·동해 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장), 제23경비여단 1·2대대, 환동해특수대응단, 경포변영회장, 경포해안상가변영회장, (사)수상인명구조단장, (사)해병대 강릉시전우회장, 모범운전자회강릉시지부장, 경포수상레저협회장, (사)경포자치발전협의회
- 주요내용
 - 해수욕장 관리 운영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설명
 - 해수욕장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
 - 해수욕장 운영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협의·의견수렴

5] 해수욕장 공유수면, 도시공원 점·사용 허가

- 허가시기: 6.5.(수)까지 신청 후 6.21.(금)까지 허가 완료
- 제출서류: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타 제출서류
- 주요내용
 - 점용장소: 강릉시 관내 해수욕장 공유수면 / 경포해수욕장 수변공원
 - 설 치 물: 파라솔, 썬배드, 튜브 등 / 중앙샤워장·관리본부 운영
 - 허가기간: 2024. 6. 24. ~ 8. 25.(설치기간 및 철거기간 포함)

6] 해수욕장 개장 및 이용 고시

- 근거법령: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8조 제3항 및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 고시기한: 해수욕장 개장 15일 전까지 고시(개장 및 이용)
- 고시방법: 시보 고시 및 강릉시 홈페이지 게재
- 고시내용
 - 해수욕장 지정현황,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시설현황, 준수사항, 요금표 등

7] 해수욕장 토양·수질검사

- 근거법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토양 및 수질 관리기준)
- 사업기간: 2024. 6월 ~ 8월(3개월)
- 조사대상: 관내 19개 해수욕장

구 분	개소	해 수 욕 장	비고
시범해수욕장	4	경포, 주문진, 정동진, 옥계	
일반해수욕장	4	사천진, 사근진, 강문, 안목	
마을해수욕장	11	영진, 연곡, 하평, 사천, 순긋, 송정, 등명, 남향진, 안인, 금진, 도직	

- 조사주기

구 분	해수 수질	백사장 모래
개장 前	개장일 전 1개월 이내 1회 이상	개장일 전 1개월 이내 1회 이상
개장 中	개장 후 7일 이내 1회 검사 후 2주 마다 1회 이상	-
폐장 後	폐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 1회 이상	-

- 조사항목 및 기준

조사 항목	수질 (CFU/100mL, MPN/100mL)		백사장 모래(mg/kg)				
	장구균	대장균	납 (Pb)	카드뮴 (Cd)	수은 (Hg)	비소 (As)	6가크롬 (Cr6+)
기준	100	500	20	4	5	4	25

- 해양환경 통합정보시스템(MEIS)을 활용하여 피서객에게 해수욕장 수질 및 백사장 오염도 정보 서비스 제공

8] 해수욕장 야영장 운영준비

- 허가시기: 7.1.(월)까지 관련허가 완료(관광정책과)
-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 운영기간: 2024. 7월 ~ 8월(2개월)
- 운영대상: 주문진, 옥계 등 해수욕장

9] 해수욕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 근거법령: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제7조
- 해수욕장 안전시설 정비·확충, 안전인력 확보 등 종합계획 수립
- 안전관리 책임관 지정, 상황관리반 구성하여 상황 발생 시 신속보고
-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결과 및 현황조사용역 최신 자료 반영하여 계획 수립

10] 수영한계선 설치

- 수영한계선설치 및 철거(해수욕장별)
 - 설치기간 및 설치내역: 개장 전까지 / 수상안전부표,레저부표 설치

11] 백사장 평탄화 및 정화 작업

- 작업기한: 개장 5일 전까지
- 작업장소: 각 해수욕장 백사장
- 사 업 량: 각 해수욕장 공유수면 점용구역

12] 수상오토바이·보트 등 안전장비 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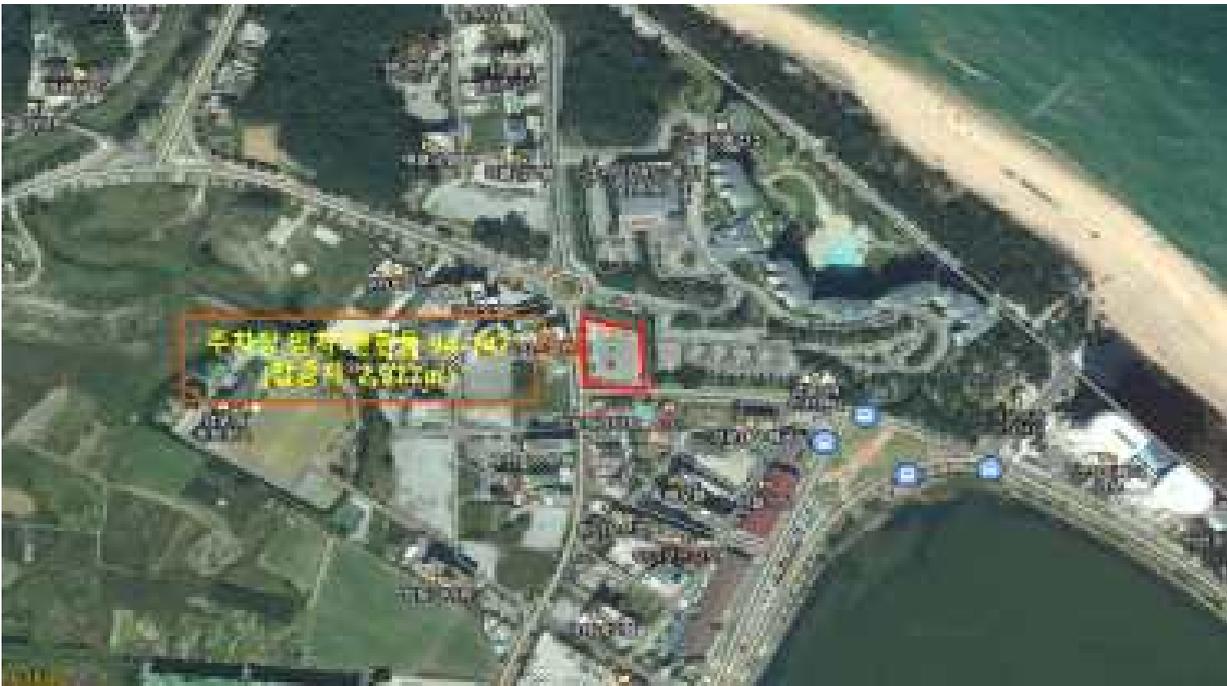
- 임차기간: 2024. 6. 26. ~ 8. 20.
- 임차수량: 19대(3인승)
- 주요내용: 해수욕장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 수상오토바이 임차 운영

구분	최근 3년간 평균 이용객 수			
	5만 미만	5만 이상 ~ 50만 미만	50만 이상 ~ 100만 미만	100만 이상
기준	인명구조장비 1대 이상	인명구조장비 3대 이상	인명구조장비 4대 이상	인명구조장비 6대 이상

13 임시주차장 확보

- 위 치: 강릉시 안현동 94-147(잡종지)
- 면 적: 2,977㎡
- 임차기간: 2024. 6. 17. ~ 8. 25.(70일 간) ※ 변동가능

【위 치 도】



2

해수욕장 운영

1] 해수욕장 개장식 운영

- 일 시: 2024. 6. 29.(토) 13:30(예정)
- 장 소: 경포해수욕장 중앙광장
- 참여인원: 약 70여 명
 - 강릉시장, 강릉시의회의장, 강릉경찰서장, 강릉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등
 - 수상구조요원 대표, 해수욕장 운영 종사자 등
- 주요내용: 개장선언, 축사, 선서식 등

기타 해수욕장 개장식

- 개장식 · 용왕제(주문진, 옥계 · 정동진) 실시
 - 행사일시 : 2024. 7. 5.(금) / 시간은 자율결정
- 일반 및 마을해수욕장 : 해수욕장운영위원회 주관 자체 시행

2] 경포해수욕장 운영인력 배치

- 기 간: 2024. 6. 27. ~ 8. 20.(55일)
 - 정상 개장기간: 2024. 6. 29. ~ 8. 18.(51일간)
- ※ 해수욕장 개장 전 · 후: 6.27.~6.28.(2일) / 8.19.~8.20.(2일)
안전요원 14명 / 청소요원 30명 배치
- 운영인원: 379명(해수욕장 개장기간)
- 사업별 인력배치계획

사 업 명	배치 기간	인력별								
		계	공무원	대학생	안전요원	단속 용역	청소	교통	경찰	소방
해수욕장 운영	6.29~8.18	259	3	15	72	14	79	22	37	17
해수욕장 일, 숙직	6.29~8.18	26	6	-	20	-	-	-	-	-
해수욕장 개장 전	6.27~6.29	47	3	-	14	-	30	-	-	-
해수욕장 폐장 후	8.19~8.20	47	3	-	14	-	30	-	-	-

※ 환동해특수대응단 인력(소방) 10명 포함(경포투입)

③ 경포해수욕장 야간개장 운영

- 사업기간: 2024. 7. 27.(토) ~ 8. 10.(토) / 15일간
- 운영시간: 18:00 ~ 21:00(3시간)
- 장 소: 경포해수욕장 중앙통로(L=200m, B=20m)
- 근무인원: 총 30명/일 (관광정책과 3, 수상안전요원 14, 의료 1명, 용역 12)
- 주요시설: 조명시설 3개소, 안내판 등
- 구조장비: 수상오토바이 4대, 구명보트 2대, 인명구조드론 1대
- ※ 그 외 해수욕장은 7.27.(토)~ 8.10.(토)까지 1시간 수영시간 연장운영 → 별도 고시 예정

④ 경포해수욕장 종합 물놀이 시설 운영

- 운영기간: 2024. 7. 5. ~ 2024. 8. 18.(45일간)
- 시간/장소: 10:00 ~ 17:00 / 오리바위 일원 및 중앙광장 좌측
- 운영방식: 위탁용역(1일 22명 배치)
- 주요시설: 오리바위 다이빙대 활성화를 위한 해상 위 물놀이 시설 (폰툰 및 수상물놀이 시설), 초대형 워터슬라이드, 해수 풀장(2동), 기타 편의 시설(안내소, 쉼터)
- 이용요금: 무료

⑤ 테마해수욕장 운영(애견해수욕장)

- 사업배경: 반려견과 함께 여름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 테마해수욕장 조성
- 운영기간: 2024. 7. 5.(금) ~ 8. 18.(일), 45일간
- 운영위치: 안목해수욕장(머구리횃집 앞~펍시카페 앞 해변 일원)
- 총사업비: 76,000천원(시비)
- 이용요금: 해수욕장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 징수

6] 해수욕장 축제 운영

【제4회 강릉 비치비어 축제】

- 행사주관: 강릉 비치비어페스티벌추진위원회
- 행사일시: 2024. 6. 28.(금) ~ 6.30.(일) (3일) / 14:00 ~ 22:00
- 개최장소: 경포해수욕장 중앙통로
- 주요행사: 수제맥주 및 로컬푸드 판매, 특설무대 라이브 공연 등

【2024 경포 썸머 페스티벌】

- 행사일시: 2024. 7. 30.(수) ~ 8. 4.(일)
- 개최장소: 경포해수욕장
- 주요행사: 불꽃놀이, 참여형 프로그램, 특설무대 인기가수 공연 등

【2024 주문진해수욕장 해변축제】

- 행사주관: 주문진해수욕장운영위원회
- 행사일시: 2024. 8월 초 예정
- 개최장소: 주문진해수욕장 백사장
- 주요행사: 해산물 음식축제, 조개잡이 체험행사, 가족참여 해변게임 (백사장 보물찾기) 등

7] 해수욕장 인명구조드론 운영

- 경포해수욕장 내 인명구조 투하장치 및 써치등 부착 드론 2대 운영(야간비행 실시)
- 해수욕장 내 각종 안내사항 알람을 위한 사족보행 드론 1대 운영

IV. 해수욕장 안전계획

1 24시간 상황유지 체계 구축

2 여름경찰관서 운영(강릉경찰서)

3 해수욕장 운영지원(강릉소방서)

4 연안해역 안전관리 지원(동해해양경찰서)

5 연안해역 안전관리 지원(속초해양경찰서)

6 해수욕장 날씨 서비스 제공(강릉기상청)

7 해수욕장 운영지원(원동해특수대응단)

IV. 해수욕장 안전계획

1 24시간 상황유지 체계 구축

① 종합상황실 운영

- 운영시간: 24시간
- 주요내용
 - 수상안전요원 근무 및 수시 안전교육 실시
 - 수상안전요원 1일 10~15명 야간순찰 근무
 - 당직근무 및 취약시간대(새벽 1시~5시) 안전사고 예방 순찰

② 유관기관과의 안전사고 체제 구축

강 령 시	▶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총괄 해수욕장 관련 예산확보 등
경 찰	▶ 여름경찰서 운영, 질서유지·방법·치안활동 등
해 양 경 찰	▶ 해상인명 구조 및 현장출동 상황처리
1 1 9 구 급 대	▶ 의료지원 및 응급환자 수송
환동해특수대응단	▶ 안전사고 신속 대응 및 예방활동

③ 불법 무질서 행위 강력 단속

- 백사장(송림) 내 이동 불법 식품 판매행위 근절
- 경포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 및 횡집 상가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실시 ⇒ 경찰서, 보건소 등 협조
- 진안상가 주변 자전거 대여점의 인도 및 도로 무단점용으로 보행자 및 주변 상가 불편 초래 ⇒ 집중 계도 및 단속

- 횃집 상가 주변 주차장 시비 해소
 - 동해횃집, 한미횃집 앞 사유지 주차장(안내표지판 별도 설치)
 - 불법 단속요원 상시 배치, 지도 및 단속

4 이안류 대응

- 실시간 이안류* 모니터링 구축·운영: 경포해수욕장

* 이안류 : 파도에 의해 수송된 바닷물이 해안 표층에서 부서지며 쌓이게 되고, 쌓인 바닷물이 표층이 아닌 수면 아래에서 바다 쪽으로 강한 흐름을 형성하며 빠르게 바다로 빠져나가는 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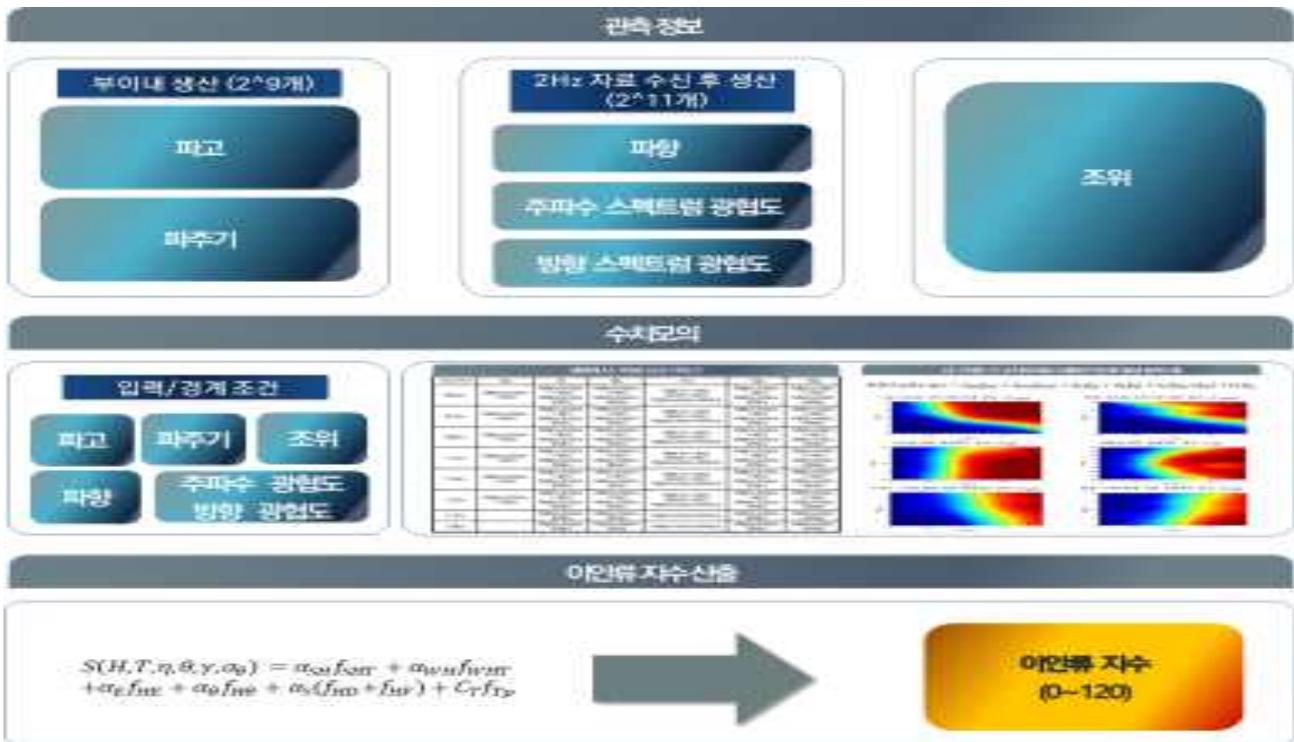
<이안류 발생 전경>

- 기간: 2024. 6. 1. ~ 8. 31.
- 운영주체: 국립해양조사원 및 기상청 협업체계 구축
- 운영방법
 - 웹페이지 및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제공(소방, 해경, 지자체)
 - 위험지수에 따라 발생가능성을 4단계로 분류하여 정기적 문자 발송
- 이안류 위험단계 분류기준에 따른 통제방안

단계	위험지수	해수욕 가능 여부	입수제한 등 조치사항
관심 (희박)	$0 \leq R < 30$	이안류 발생이 희박한 상황으로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일상 해수욕 가능	-
주의 (가능)	$30 \leq R < 55$	이안류 발생이 가능한 상황으로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는 수영이 능숙한 사람만 해수욕 가능	- 수영 능숙한 사람만 입욕
경계 (농후)	$55 \leq R < 80$	강하고 돌발적인 이안류 발생이 농후한 상황으로 수영이 능숙한 사람도 가능한 해수욕 자제	- 관계기관 협의 통제 - 안전요원 증가·전진배치
위험 (대피)	$80 \leq R \leq 100$	매우 위험한 이안류 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황으로 해수욕 불가(해수욕객 대피)	- 입욕불가 및 대피 - 최고수준 안전관리 전환

※ 이안류 위험지수는 파도의 특성(파고, 주기, 파향 등) 분석하여 산정함.

<이안류 지수 생산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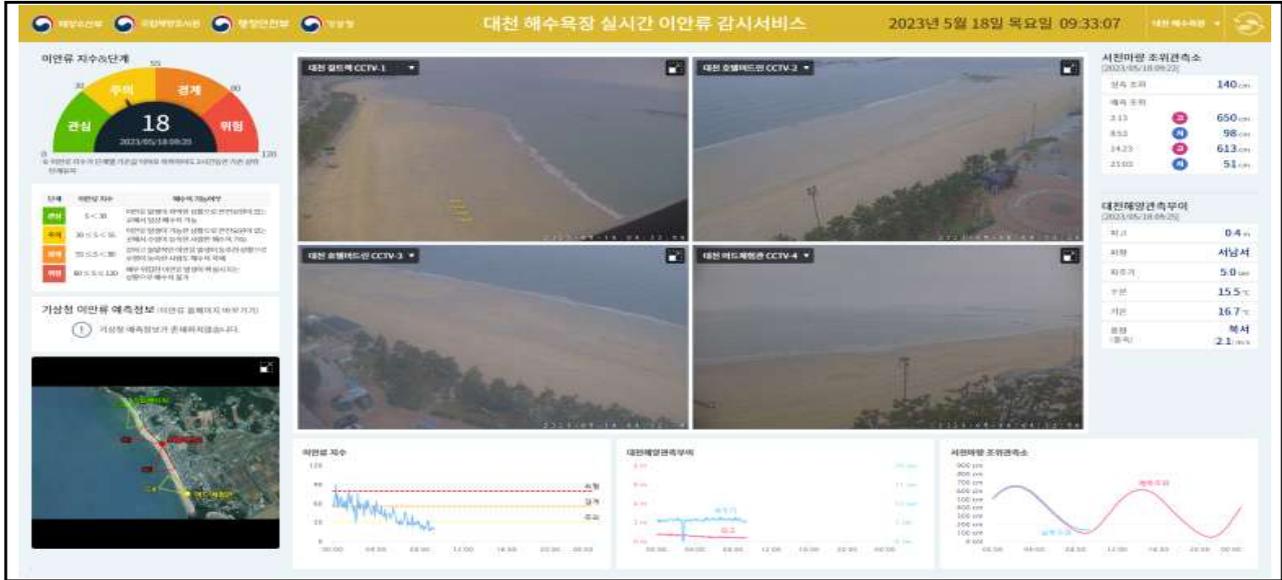
<실시간 이안류 감시서비스 화면>

※ 문자 서비스



○ 조치사항: 이안류 발생 시 경고방송 및 상황 전파

※ 웹 서비스



5] 수상안전요원 운영

- 배치기간: 2024. 6. 27. ~ 8. 20.(55일간)
- 근무시간
 - 경포해수욕장: 09:00 ~ 익일 09:00
 - 기타 해수욕장: 09:00 ~ 18:00 ※ 성수기 1시간 연장근무 실시
- 근무인원: 207명
 - 경포해수욕장 개장기간: 72명
 - 그 외 해수욕장 개장기간: 135명 ※ 변동가능
- 배치장소: 경포해수욕장 등 18개 개장 해수욕장
- ※ 미개장(도직해수욕장) 제외

◆ 선발기준

- ① 1순위 인명구조 또는 수상구조사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소지자
- ② 2순위 인명구조 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③ 3순위 동력수상레저 조정면허 소지자
- ④ 자격증이 없는 수영 능력자

◆ 역할 및 임무

- 물놀이 안전관리지역 감시 및 순찰, 익수자 응급구조(심폐소생술 등)
- 해수욕장 주변 각종 위험요인의 사전 제거, 기타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도 등

◆ 안전관리요원 투입전 교육(필수)

- 교육시기 및 방법: 해수욕장 개장 전 / 각 해수욕장별 집합교육
- 교육내용: 각종 구조영법, 심폐소생술 및 해수욕장 근무 노하우 등
- 지원기관: 동해, 속초해양경찰관서

6 TRS 무전기 개통 및 운영

- 보유현황: TRS 무전기 17대
- 사용기간: 2024. 6월~8월(3개월), 계약은 6개월 단위
- 배 부 처: 경찰 1, 소방 1, 군부대 2, 수상안전 2, 수난의소대 1, 해경 2, 환동해특수대응단 1, 해수욕장 관리본부 7대
- 주요내용: 위급상황 전파 및 긴급구조를 위하여 TRS 무전기 배부

참고 1

수상안전 관리현황

해수욕장명	읍면동	수 상 안 전					인 명 구 조 장 비									
		소 계	경 찰	해 경	소 방	안 전 요 원	소 계	구 명 조 끼	제 트 스 키	구 조 선	보 트	레 스 큐 칸	구 명 부 환	한 계 부 표	방 송 시 설	기 타
계	9개소	265	37	-	21	207	997	202	19	-	5	89	72	580	30	-
경 포		126	37	-	17	72	159	60	6	-	2	20	10	60	1	-
주 문 진	주문진읍	32	-	-	4	28	124	50	2	-	1	10	8	50	3	-
영 진	연 곡 면	8	-	-	-	8	38	4	1	-	-	5	2	25	1	-
연 곡		10	-	-	-	10	42	4	1	-	-	4	2	30	1	-
하 평	사 천 면	3	-	-	-	3	41	5	-	-	-	3	2	30	1	-
사 천 진		9	-	-	-	9	63	10	1	-	-	9	10	30	3	-
사 천		3	-	-	-	3	42	5	1	-	-	3	2	30	1	-
순 곳	경 포 동	7	-	-	-	7	17	-	-	-	-	1		15	1	-
사 근 진		11	-	-	-	11	28	4	1	-	-	1	1	20	1	-
강 문	초 당 동	8	-	-	-	8	66	10	1	-	-	8	8	30	1	-
송 정	송 정 동	3	-	-	-	3	18	2	1	-	-	2	2	10	1	-
안 목		8	-	-	-	8	34	4	1	-	-	4	4	20	1	-
남 향 진	성 덕 동	5	-	-	-	5	35	5	1	-	-	5	3	20	1	-
안 인	강 동 면	3	-	-	-	3	15	2	-	-	-	-	2	10	1	-
등 명		3	-	-	-	3	25	2	-	-	-	-	2	20	1	-
정 동 진		10	-	-	-	10	60	15	1	-	1	-	8	30	4	-
금 진	옥 계 면	8	-	-	-	8	60	3	-	-	-	2	3	50	2	-
옥 계		8	-	-	-	8	84	16	1	-	1	10	2	50	4	-
도 직		-	-	-	-	-	55	1		-		2	1	50	1	-

참고 2

해수욕장 운영 인력배치 현황

해수욕장명	읍면동	계	행정활동			안전활동				청소활동			기 타			
			소 계	공 무원	아 르 바 이 트	소 계	경 찰	해 경	소 방	안 전 요 원	소 계	해 변	화 장 실	소 계	사 회 단 체	교 통 관 리
합 계	9개소	587	73	15	58	265	37	-	21	207	180	131	49	69	32	37
경 포	시 직영	345	43	3	40	126	37	-	17	72	79	60	19	42	20	22
주 문 진	주문진읍	73	5	3	2	32	-	-	4	28	29	23	6	7	2	5
영 진	연 곡	14	-	-	-	8	-	-	-	8	6	3	3	-	-	-
연 곡		19	-	-	-	10	-	-	-	10	5	4	1	4	-	4
하 평	사 천	6	-	-	-	3	-	-	-	3	3	2	1	-	-	-
사 천 진		17	3	1	2	9	-	-	-	9	5	4	1	-	-	-
사 천		5	-	-	-	3	-	-	-	3	2	1	1	-	-	-
순 굿	경포동	11	-	-	-	7	-	-	-	7	3	2	1	-	-	-
사 근 진		18	3	1	2	11	-	-	-	11	3	2	1	-	-	-
강 문	초당동	16	3	1	2	8	-	-	-	8	4	2	2	-	-	-
송 정	송정동	9	1	-	1	3	-	-	-	3	3	2	1	2	2	-
안 목		19	3	1	2	8	-	-	-	8	6	5	1	2	2	-
남 향 진	성덕동	13	4	1	3	5	-	-	-	5	4	3	1	-	-	-
안 인	강동면	6	-	-	-	3	-	-	-	3	3	2	1	-	-	-
등 명		6	-	-	-	3	-	-	-	3	3	2	1	-	-	-
정 동 진		20	4	2	2	10	-	-	-	10	6	4	2	-	-	-
금 진	옥계면	16	-	-	-	8	-	-	-	8	4	2	2	4	2	2
옥 계		32	4	2	2	8	-	-	-	8	12	8	4	8	4	4
도 직		-	-	-	-	-	-	-	-	-	-	-	-	-	-	-

2 여름경찰관서 운영(강릉경찰서)

1 추진목적

- 여름 피서 기간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현장 대응 능력 강화로 치안환경 확보를 위한 여름경찰관서 운영
- 최근 이상동기 범죄 발생 등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다중밀집지역 및 해변 등의 주요 피서지의 각종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효율적 대응

2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4. 6. 29. ~ 8. 18.(51일간)

비수기 < 27일간 >	성수기 < 21일간 >	비수기 < 3일간 >
6. 29.(토) ~ 7. 25.(목)	7. 26.(금) ~ 8. 15.(목)	8. 16.(금) ~ 8. 18.(일)

※ 비수기(09:00~22:00) · 성수기(24시간) 구분, 탄력적 경력 운영

- 여름경찰관서 운영 총괄(기구표)

여름경찰관서 총괄(범죄예방대응과장)					
경 포	관리 책임관	주문진, 소금강 정동진	관리 책임관	기타 지역	관리 책임관
여름경찰서	여름경찰서장 동부지구대장	거점 및 유동순찰 병행	북부지구대장 강동파출소장 옥계파출소장	거점 및 유동순찰	관할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3 추진계획

① 경포 여름경찰서

- 현 경포치안센터를 해수욕장 개·폐장 기간에 맞춰 여름경찰서로 운영
- 경찰관 일시점 근무 인원(비수기: 37명, 성수기: 77명 / 일시점 42명)

※ '24년 경포여름경찰관서 운영 계획 수립 중, 근무 인원은 변동 가능

- 여름서 기간 중 112 순찰 차량 총 2대 운영, 신고 집중 처리

② 여름경찰서 전담요원 배치

- 비수기 배치 현황(총 37명) / 6.29.(토) ~ 7.25.(목), 8.16.(금) ~ 8.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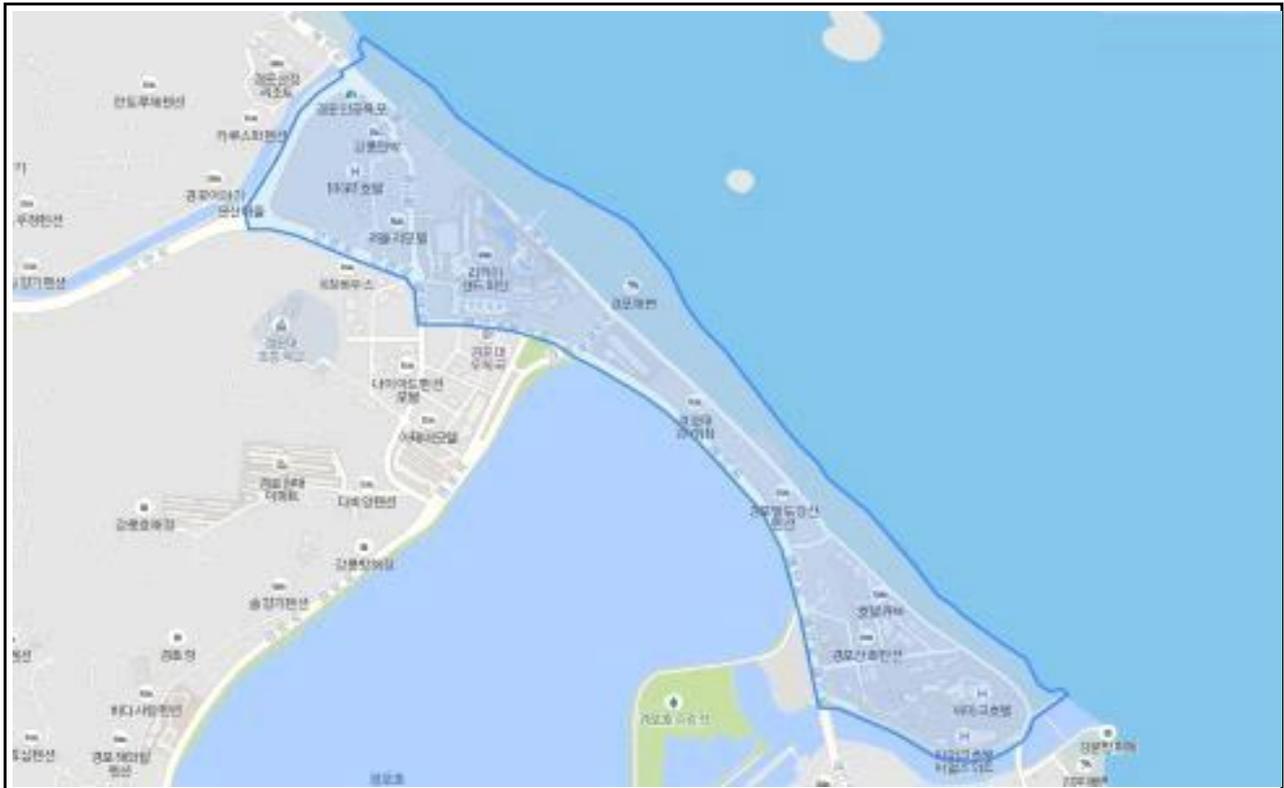
구분	여름서 근무자(총 40, 일시점 22)						기능별 근무자(15)			
근무인원	여름서장	상황팀장	관리업무	상황근무	기동대	기동순찰대	여청	형사	교통	동부
55 (37)	1 (1)	2 (1)	1 (1)	2 (2)	20 (10)	14 (7)	3	4	6	2

- 성수기 배치 현황(총 91명, 일시점 42명) / 7.26.(금) ~ 8.15.(목)

구분	여름서 근무자(25)						기능별 근무자(15)				
근무인원 (일시점)	여름서장	상황팀장	관리업무	상황근무	112순찰	기동대	기순대	여청	형사	교통	동부
91 (42)	1 (1)	2 (1)	1 (1)	2 (2)	8 (2)	20 (10)	14 (7)	3	4	6	2

※ 성수기 기준, 4조 2교대(주야휴비) 근무

③ 경포여름경찰관서 관할 지정(인공폭포-씨마크호텔)



4 교통관리 계획

① 경포 여름경찰서

근무 인원			동원 장비		
계	교통경찰	모범	계	순찰차	싸이카
31	7	22	7	3	4

※ 모범운전자 : 09:00~22:00(2교대 근무 / 일시점 근무인원 11명)

② 비수기 · 성수기 구분, 교통수요에 따른 탄력적 경력 운력

기간	인원 및 장비		배치장소	근무방법
	인원	장비		
비수기	주간	경찰 2	순찰차 2 싸이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변입구 교차로 ◦ 태백산맥 교차로 ◦ 현대아파트 교차로
	탄력	경찰 2		
성수기	주간	경찰 3	순찰차 3 싸이카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카이 회전교차로 ◦ 인공폭포 삼거리 ◦ 야외샤워장 교차로
	탄력	경찰 3		

※ 기간 중 경찰관기동대 20명 운영(예정)

③ 정체 구간 관리

- 일방통행 고정운영 구간: 경포해변 입구~인공폭포 삼거리
- 일방통행 탄력운영 구간: 2개소(태백산맥 · 인공폭포 교차로)

연번	정체구간	근무 및 통행방법
1	태백산맥 교차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카이 회전교차로→태백산맥 교차로→경포DC마트 방면 →현대아파트 방면 직진 유도 ◦ 태백산맥 교차로 라바콘 및 시설물 설치 ☞ 경포치안센터 방면 좌회전 금지
2	인공폭포 교차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백산맥 교차로→라카이 회전교차로→인공폭포 직진 유도 ◦ 라카이 회전교차로 라바콘 및 시설물 설치 ☞ 라카이 회전교차로에서 즈므고가 방면 좌회전 금지

3

해수욕장 운영지원(강릉소방서)

1 추진배경

-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3855호 「강원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대응을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운영

2 운영계획

- 운영기간
 - 경포해수욕장 : 2024. 6. 29. ~ 8. 18.(51일간)
 - 주문진해수욕장 : 2023. 7. 5. ~ 8. 18.(45일간)
- 운영장소: 경포해수욕장 외 1개소(주문진해수욕장)
- 배치계획

해수 욕장	1일 근무인원 (배치시간)		배치장비	주요활동
	소방공무원 (10:00~17:00)	시민수상구조대 (13:00~17:00)		
경 포	3명	4명	• 구급차 1대 • 구조보트 1대	•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 • 수난사고 인명구조활동 등
주문진	-	4명	• 구명부환 등	• 안전순찰 및 계도활동 • 응급처치 보조 등

4

연안해역 안전관리 지원(동해해양경찰서)

1] 관련근거

- 해수욕장 법 제24조(안전관리지침) 동법 제25조(안전관리조치 등)

2] 지원방안

- 기본방침: 지자체 주관 해수욕장 안전관리, 해경은 지원업무
- 지원방향: 해양순찰·상황대응 등 연안해역 중심의 안전관리
 - (지자체) 해수욕장 관리·운영 주체 등 안전관리 업무 총괄
 - (해 경) 해상 중심의 구조 임무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 수행

3] 안전관리 지원방안

- 지원기간: 해수욕장 개장 기간 전·후 2주 기간
 - ※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해수욕장 외곽 중점 안전관리 실시
- 지원인력
 - (해상) 강릉연안구조정(1대), 수상오토바이*(1대)
 - (해안) 순찰차(2대)
- ※ 배치장소(안) 사천항 내 사천출장소 수상오토바이 계류 시설

4] 지원방법

- 해수욕장 개장 전·폐장 후 강릉파출소 해양순찰대 운영
- 해수욕장 경계선 외측 해상순찰 안전관리 지원체계 유지
- 포악상어 출몰 해상 상어차단 기동 및 유관기관 상황전파

5] 야간개장 안전관리 지원(안)

- 물놀이 가능 시간 外 취약시간 선정 해상·육상 예방 순찰 실시
 - ※ 성수기 기간: 경포해수욕장 21시까지, 그 외 해수욕장 19시까지
- 강릉파출소 해양순찰대 24시간 비상대응 근무체계 마련

5

연안해역 안전관리 지원(속초해양경찰서)

1 추진현황

- 지원 기간: 7. 5.(금) ~ 8. 18.(일) / 45일
- 관할 파출소: 주문진파출소(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1804)
 ※ 강릉시 관할 중 주문진·영진해변 연안해역 안전관리 및 해양사고 예방·초동조치
- 근무 형태
 - 주 간 : 연안구조장비 이용 수영경계선 외곽 위주 해상 순찰
 - 야 간 : 순찰차 이용 해안가 위주 순찰(필요 시 해상 순찰)
- 파출소 보유 장비: 순찰차 2대, 연안구조정 1척, 수상오토바이 2대

2 안전관리 지원

기간	내용
해수욕장 개장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 안전관리 회의, 해수욕장 협의회 등 참석 · 해수면 안전시설 위주 중점 점검(합동점검 요청 시)
해수욕장 개장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외곽 위주 안전순찰 확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구조정 이용 주문진~영진해수욕장 일대 해상순찰 · 상황발생 대비 구조 즉응태세 유지 · 구명조끼 입기 등 해양안전 홍보 캠페인 실시 · 풍랑주의보 등 기상악화 시 순찰 증회 · 주말 중 드론순찰대 이용 주문진해수욕장 해상순찰
해수욕장 폐장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장 직후 사고 대비 순찰 강화 및 구조 즉응태세 유지 · 지자체 주관 해수욕장 안전관리 평가회의 참석

6

해수욕장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강릉기상청)

1 추진목적

- 여름철 강원동해안을 찾는 피서객의 해수욕장 날씨정보 수요 증대에 따른 대국민 기상서비스 제공
- 예보, 수온·파고, 조석 정보 등 여름철 여가생활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생활의 안전 도모 및 편의 증대

2 추진개요

- 기간/방법: 2024. 6. 29. ~ 8. 18. 매일 오전 9시 / 앱메시지
- ※ 해수욕장 개·폐장 일정에 따라 기상정보 제공 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 제공대상: 강원도환동해본부·강원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담당 공무원
- 제공정보: 강원도 해수욕장 94개소의 예보, 관측, 천문정보(붙임 1 참고)
- ※ 강릉시: 경포, 강문, 안목해수욕장 등 총 20개소 대상으로 정보 제공

○ 통보문 상세내용

- (예보) 초단기·단기·중기예보

구분	제공 주기		자료 생성 방법
	생산 주기	예보 간격	
초단기예보	10분	1시간	해수욕장이 위치한 지점
단기예보	3시간	3시간*	해수욕장이 위치한 지점
중기예보	12시간	(~+7일) 12시간 (~+10일) 24시간	해수욕장이 포함된 광역 예보

※ 해수욕장 날씨 서비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3시간 단기예보 간격 유지

- (관측·천문) 수온·파고, 일출·몰, 밀·썰물

구분		제공 주기	자료 생성 방법	비고
관측	수온·파고	30분	해수욕장과 가장 근접한 부이/파고부이	기상청 장비 활용
천문	일출·일몰	일	해수욕장이 위치한 지점	한국천문연구원 제공
	밀물·썰물	일	해수욕장과 가장 근접한 조위소	국립해양조사원

※ 기상청 날씨누리 누리집 → 테마날씨 → 해수욕장 예보에서도 확인 가능(생성주기 30분)

경포 해수욕장 날씨정보

초단기 예보

2023년 06월 16일 16:30 발표

구역	현재날씨	16시 예보	17시 예보	18시 예보	19시 예보	20시 예보	21시 예보
강원도 강릉시 경포동	기온 28.6℃ 습도 37% 1시간 강수량 - 풍향 남동 풍속 2.4m/s	맑음 / - 26℃ 남동 3m/s 45%	맑음 / - 26℃ 남 2m/s 40%	맑음 / - 26℃ 남 1m/s 46%	맑음 / - 24℃ 남서 1m/s 45%	맑음 / - 24℃ 서 2m/s 50%	맑음 / - 23℃ 남서 4m/s 55%

[단위 : 1시간강수량(mm), 습도(%), 기온(℃), 풍속(m/s)]

동네예보(3시간) 강원도 강릉시 경포동

2023년 06월 16일 14:00 발표

날짜	오늘 (16일)			내일 (16일)								모레 (17일)							
	18	21	24	03	06	09	12	15	18	21	24	03	06	09	12	15	18	21	24
날씨																			
강수확률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강수량(적설)	-	-	-	-	-	-	-	-	-	-	-	-	-	-	-	-	-	-	-
최저기온	-			21								21							
최고기온	-			33								32							
기온	27	23	23	23	22	27	31	33	32	28	26	24	23	27	30	31	29	24	22
풍향																			
풍속	2	4	5	6	6	3	4	4	3	6	6	6	6	6	6	6	2	2	6
습도	40	55	55	60	60	50	40	35	35	40	35	40	50	40	30	30	35	55	60
파고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0.6

[단위 : 강수량(mm), 적설(cm), 습도(%), 최저기온/최고기온/기온(℃), 풍속(m/s), 파고(m), 강수확률(%)]

경포

수온·파고

일출·일몰

2023년 06월 16일

조석정보

2023년 06월 16일

수온/파고	
14.2℃/0.6m	

16(월)	-	-
16(화)	-	-

16(월)	-	-	-	-
16(화)	-	-	-	-

일출일몰 : 한국천문연구원, 조석정보 : 국립해양조사원 [단위, cm]

중기예보 육상날씨 및 최저기온/최고기온

2023년 06월 16일 06:00 발표

구역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26(목)
	오전	오후											
강릉	(40)	(40)	(40)	(20)	(20)	(20)	(20)	(30)	(20)	(10)	(20)	(0)	(10)
	19/22		16/21		14/24		18/26		16/23		15/24	16/26	17/26

[단위:육상날씨 강수확률(%), 최저기온 / 최고기온(℃)]

7

해수욕장 안전관리 운영지원(환동해특수대응단)

1 지원개요

- 운영기간: '24. 6. 29.(토) ~ 8. 18.(일) 51일간 ※ 일정변동 가능
- 운영장소: 강릉시 경포해수욕장
- 배치인원: 10명 내외(직무·계급을 고려하여 자체 선정)
- 주요내용: 경포해수욕장 내 안전사고 신속 대응 및 예방활동

2 세부계획

- 배치시간: '24. 6. 29.(토) ~ 8. 18.(일) 매일 10:00~17:00
- 배치인원: 10명(일일 최대)
- 주요내용
 - 수영한계선 외부 순찰 및 안전조치
 - 해수욕장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 활동
- ※ 지원기간 강원도 및 전국 풍수해 등 대형재난 출동 외 해수욕장 안전관리 전담
- 주요장비

구 분	기동장비(5대)	수상장비(2대)	특수장비(5대)	기타장비
장비명	다목적특수구조차 1 산불진화차 2 기타 2	제트스키 1 고속보트 1	드론 2, 수중드론 1 전지형 사륜차 1 수중영상 탐색장비 1	개인 안전 장비 세트 (다이버세트, 레스큐 튜브 등)

V. 해수욕장 환경계획

1 피사철 해수욕장 등 청소지원지원순환과

2 공중화장실 관리(환경과)

3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불법시설물 단속(해양수산과)

4 해수욕장 주변송림보호 단속(산림과)

5 해수욕장 흡연단속(건강증진과)

6 해수욕장 의료봉사실 운영(보건행정과)

7 바가지요금 해소대책(위생과)

V. 해수욕장 환경계획

1 피서철 해수욕장 등 청소지원(자원순환과)

① 추진목적

-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해수욕장, 마을휴양지, 산간계곡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피서지 환경 제공

② 추진개요

- 추진방향: 권역별 관리주체 철저히하여 쾌적한 피서지 환경제공
- 추진기간: 2024. 6. 29. ~ 8. 18.(51일)
- 권역별 관리주체

구 분	관리주체	관리내용	비 고
경포해수욕장(1)	관광정책과	경포해수욕장 청소총괄	폐기물수집운반처리 (자원순환과)
기타해수욕장(18)	읍.면.동	해수욕장 청소관리	환경관리원, 기간제
산간계곡(6), 마을관리휴양지(6)	읍.면.동, 마을별 관리주체	계곡,휴양지 청소관리	환경관리원, 휴양지관리주체

③ 세부추진계획

- 청소 총괄 및 상황실 운영: 관광정책과
 - 설치장소: 경포해수욕장 청소관리본부 내
 - 임 무: 해수욕장 청소 및 청소인력 관리
- 청소인력 배치현황: 경포해수욕장 청소대책 별도 수립(관광정책과)
 - 청소인력 관리 및 청소 일체
- 쓰레기 분리선별장 운영 및 청소장비 설치: 7. 1일 전까지
 - 쓰레기 및 재활용품 선별장: 1개소, 경포해수욕장 북쪽

- 쓰레기통: 40개, 해수욕장 전체 구역
-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20개, 해수욕장 전체 구역
- 음식물수거용기: 5개, 해수욕장 송림 내 및 상가 일원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 2개반 4명(자원순환과)
 - 음식점 및 시설물 순회 방문: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여부 점검
 - 휴지, 담배꽂초 등을 버리는 행위 계도·단속
 - 불법투기자 적발 시 1차 계도 실시 ⇒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현장 단속
- 해수욕장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
 - 대행구간: 사근진~경포~강문~송정~안목~남항진
 - 대행업체: 대행구간 내 업체별 수거 및 기동처리반 운영

2 공중화장실 관리(환경과)

① 추진개요

- (추진방향) 해수욕장 개장기간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상태 점검반 운영
- (사업대상) 관내 공중화장실 142개소
- (주요내용) 화장실 환경정비 및 해수욕장 이동화장실 임차(6동) 배치

② 세부추진계획

- 해수욕장 개장 전·후 관리실태 점검 및 환경정비
 - 기 간: 2024. 6. 24.(월) ~ 8. 23.(금)
 - 대 상: 142개소(환경과 13개소, 읍·면·동 129개소)
 - 점 검 반: 환경과(담당 등 2명), 해당 읍·면·동(자체적으로 편성)
 - 추진내용: 화장실 내·외 시설물 훼손·방치 여부 점검, 주변 환경정비
 -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 화장실 내 범죄예방 활동 지속 추진(142개소)
 - 안심스크린 점검: 불법촬영 원천차단 방법시설물 확인(50개소)
 - 안심비상벨 점검: 비상벨 정상가동 확인(환경과 10개소, 인구가족과 64개소)
 - 해변 관광객 편의를 위한 이동화장실 임차운영
 - 기 간: 2024. 7. 5.(금) ~ 8. 18.(일) / 45일간
 - 임차수량: 7동 (6.0m×2.5m×3.1m)
 - 설치장소: 경포(1동), 주문진(1동), 연곡(1동), 사천(3동), 옥계(1동)
 - 운영주체: 해당 읍·면·동
- ※ (할 일)청소관리 및 편의용품 비치 등
- 경포지구 공중화장실 청소인력 확충배치
 - 기 간: 2024. 7. 5.(금) ~ 8. 18.(일) / 45일간
 - 대 상: 경포중앙통로 화장실 등 12개소
 - 배치인원: 19명(기존 기간제근로자 6명 + 추가 일시사역 13명)

3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불법시설물 단속(해양수산과)

1 추진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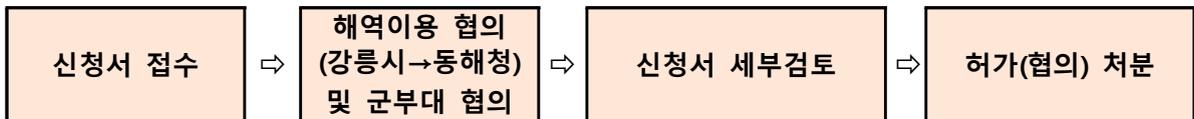
- 여름철 급증하는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점·사용을 지양하고 친환경적·효율적인 이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 및 공유수면의 지속적인 보전 도모

2 추진개요

- (관리방향)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
- (허가처분) 일반의 이용에 끼치는 영향 주변 경관과의 조화, 공약침해 여부 등 검토 ⇒ 처분
- (사업대상) 주문진 향호리 ~ 옥계면 금진리 공유수면 내(변동 가능)
- (주요내용) 관내 백사장(공유수면) 내 불법 점·사용 및 금지행위 단속 및 철거

3 세부추진계획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협의) 처분



- 공유수면 불법 시설물 단속 및 철거용역 추진
 - 단속대상: : 공유수면 내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몽골텐트, 천막, 평상 등)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위반사항 중점 단속

① 추진목적

-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생태계 유지 보전과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
- 캠핑 문화 확산에 따른 불법행위 급증(송림 내 취사, 야영행위)

② 추진개요

- 단속기간: 연중 실시
 - ※ 여름피서철 7~8월 특별 진중 단속
- 주요 단속구역: 강릉지역 해변 14개 구간 1,055,039㎡
 - ⇒ 해변 송림구역 현황 별첨 참조

③ 추진계획

- 산림과 직원 해변 송림 단속계획
 - 단속기간: 연중 실시(5개조 16명으로 편성)
 - 근무장소: 주문진, 연곡, 정동진, 옥계, 도직 해변 전 구간
- 읍면동 해변 송림 단속협조
 - 단속기간/근무장소 : 연중실시 / 해당 읍면동의 해변
- 송림 내 주요 단속내용
 - 불법주차, 야영, 취사행위 및 산림보호책 훼손행위 등 집중 단속
 - 산림 내 오물 또는 쓰레기 투기, 폐기물 불법 매립행위 단속
 - 산림 내 무단 취사행위 단속
 - 산림 내 불 놓기,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단속
 -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위반행위 단속

해변 주변 송림보호구역 현황

구 간 별	위 치	면 적 (㎡)	비 고
계		1,055,039	
제1.2구간 주문진해변(14%)	갯마을 해수욕장 ~ 연곡면 영진리	149,326	
제3구간 연곡해변(14%)	연곡면 동덕리	138,177	
제4.5.6구간 사천해변(10%)	사천면 사천진리, 방동리, 미노리,산대월리	108,019	
제7.8.9구간 경포해변(18%)	경포 해변폭포 ~ 강릉고교 까지	195,885	
제10구간 송정해변(21%)	송정동, 견소동	214,940	
제11.12.13.14구간 남향진,옥계,도직 해변(23%)	남향진, 정동진리, 옥계 금진, 도직	248,692	

주요해변 송림보호구역



강릉시 송림보호구역 (담당부서별)



*담당부서 외 지역은 산림과 소관임.

① 추진목적

- 담배연기 없는 해수욕장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흡연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해수욕장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② 추진개요

- (추진방향) 해수욕장 이용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
- (사업대상) 해수욕장 이용객
- (주요내용)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및 금연환경 조성

③ 추진계획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 기 간: 2024. 6. 29.~8. 18.
 - 장 소: 관내 18개 해수욕장
 - 단속반: 3개조 6명(공무원 2, 공무원직 2, 위촉직 금연지도원 2)
- ※ 인력현황: 7개조 15명(공무원 5 / 공무원직 2 / 위촉직 금연지도원 8)
- 운영방법
 - ▷ 주간: 18개 해수욕장 정기 흡연단속 (주말 경포-송정-안목 집중단속)
 - ▷ 야간: 경포-송정-안목 상시 흡연단속
 - 내 용: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지도단속 및 흡연자 과태료 처분

6

해수욕장 의료봉사실 운영(보건행정과)

1 추진목적

- 경포해수욕장 내 간호 인력 상시 배치로 피서객 안전사고 예방
-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후송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하고 편안한 피서지 이미지 제고

2 추진개요

- 기 간: 2024. 6. 29. ~ 8. 18.(51일간)
- 근무시간: 휴일 09:00 ~ 18:00
- 근무장소: 경포해수욕장 의료봉사실
- 근무인원: 평일 1명, 주말 2명
- 주요내용: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및 필요 시 병원 이송 등

3 추진계획

- 의료 봉사실 운영
 - 의료지원반 편성 : 1일당 2명(간호사 1, 구급차 운전 1)
 - 진료내용

- ▶ 경미한 환자 진료 및 투약(두통, 소화불량 등)
- ▶ 외상치료(찰과상, 열상 및 눈의 세척 등)
- ▶ 해파리 독소 등 응급조치

- 진료준비물

- ▶ 외상처리용 약품
- ▶ 기타 장비: 책상, 의자, 냉장고, 진료침상, 칸막이

- 응급환자 병원(응급의료기관) 이송체계 구축

- ◆ 1차 응급처치
 - ▶ 경미한 환자 진료 및 투약(두통, 소화불량 등)
 - ▶ 경미한 외상치료(찰과상 등)
- ◆ 2차 후송: 응급처치 후 중증환자 등 인근 병원 후송

- 민간의료기관 협조체제 구축

응급의료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비 고
강릉아산병원	강릉시 사천면	610-3331~3	권역응급의료센터
강릉동인병원	강릉시 포남동	651-6161 (응급실) 650-6105	지역응급의료센터
강릉의료원	강릉시 남문동	610-1430 (응급실) 610-1453	지역응급의료기관

1 추진목적

- 선제적 지도점검을 통한 숙박·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 도모
- 식중독 예방활동 및 숙박업소 불법카메라 단속 등을 통한 안전한 식품 숙박환경 제공

2 추진개요

- 추진방향: 식품·숙박업소 점검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및 민원 발생 최소화
- 사업대상: 숙박(민박)업소 700개소, 식품위생업소 300개소
- 주요내용: 휴가철 숙박·음식 분야 민원해소를 위한 민원불편센터 운영, 숙박·음식업소 위생 지도·단속 등

3 세부추진계획

- 숙박·식품 민원상황실 운영
 - 운영기간: 해수욕장 운영 기간 / 9시~18시(평일)
 - 장 소: 보건소 위생과
 - 주요내용: 민원사항 발생 시 현장 출장 조사 및 처리
- 해수욕장 주변 및 식중독 예방 관련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 기 간: 2024. 7월 ~ 8월
 - 점검대상: 식품접객업소 300개소
 - 점검내용: 조리장 및 조리기구의 위생적 관리여부 및 개인위생 확인,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등 준수사항
- 여름 피서철 호객행위 집중단속
 - 기 간: 2024. 6월 ~ 8월
 - 단속지역: 경포 횃집 밀집지역 및 관광지 주변 지역
 - 단속방법: 점검반 상시 현장점검 및 CCTV를 통한 감시
 - 단속사항: 호객행위 금지·사전계도, 단속구간 수시·집중단속 실시 등

VI. 분야별 지원 계획

1 언론매체 홍보(공보관)

2 지진해일 대비 안전계획(재난안전과)

3 해수욕장 통신지원(정보통신과)

4 해수욕장 물가안정계획(소상공인과)

5 경포도립공원 관리계획(환경과)

6 해수욕장 교통관리(교통과)

VI. 분야별 지원계획

1 해수욕장 운영 홍보(공보관)

① 추진개요

- (홍보기간) 2024. 6월 ~ 8월
- (주요내용) 해수욕장 운영 관련 언론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② 세부추진계획

- 해수욕장 운영기간 언론 보도자료 제공 및 취재 지원
- 시정소식지(월간지 강릉플러스) 게재(6~8월호 중)
 - 해수욕장 운영 일정, 주요 이벤트 등 소개
- 공식 SNS를 통한 해변 정보 제공 및 홍보
 - 개장 정보,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 게시(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 홍보 쇼츠 영상 제작 및 SNS 업로드(유튜브, 인스타그램)
 - SNS 서포터즈, 인플루언서 활용한 현장 취재 진행
- ※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현장감 있는 해변 소식 제공
-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 진행
 - 시청 앞 고가도로 LED 전광판 활용 해수욕장 개장 및 운영 홍보
 - 청사 내 승강기 모니터 홍보자료 송출(6개소)

구분	블로그	유튜브	시정소식지	비 고
홍보 예시				홍보 자료 게재

1 추진개요

- 지진해일 발생 시 지역주민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정확한 대피장소 정보 제공 및 단계별 세부대피계획 수립
- (추진방향) 지진해일 특보 발령 시 수신 및 전파 체계 점검 및 정비
- (주요내용) 지진해일대피장소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 대피장소 점검 및 정비

2 세부추진계획

【지진해일대피장소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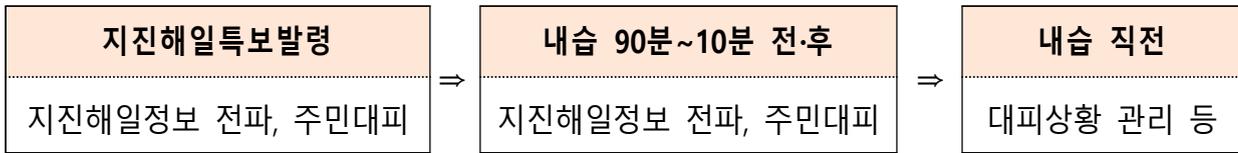
- 지진해일대피장소 재지정에 따른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
- 평상시 주민홍보, 교육, 훈련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 실시
- 재해약자에 대한 대피담당자 행동요령 교육 실시
- 지진해일 대피지도 및 국민행동요령 제작하여 시민 홍보 강화
 - 다중이용시설, 관공서 등 비치

【지진해일 특보 발령시 수신 및 전파 체계 점검 및 정비】

- 상·하반기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관리실태 자체점검 실시
 - 지역 내 대피장소 전수 점검, 미흡·지적사항 상시 보완
- 표지판 관리상태 및 관리대장 현행화
 - 설치기준에 따른 표지판 설치 및 시인성 확보, 관리상태 정비·점검 등
- 대피안내요원 현행화
 - 이장·통장, 민방위대장, 지역자율방재단원 등을 활용하여 대피안내요원 현행화

【지진해일 세부대피계획 수립】

○ 단계별 주민대피 대응체계



○ 단계별 조치사항

구 분	단계별 조치사항
지진해일 특보 발령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경보 전파매체를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 - 현장 대피 안내요원 긴급 소집 - 비상연락망체계 가동
내습 90분 전·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대피 안내요원 배치 및 대피장소 유도(읍·면·동 재난담당자) - 재해약자 대피 안내요원 배치(공무원, 이·통장) - 대피주민 신원 확인 및 대피인원 관리
내습 60분~30분 전·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해일 예상 피해지역내 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 재난문자 발송(1차) - 대피주민 상황 및 질서 관리(군·경·소방서 등) - 현장 대피 안내요원 대피장소 표지판을 따라 대피장소로 유도 - 어린이, 노약자 및 재해약자 우선대피유도 ※ 재해약자 1명당 재해약자 대피안내요원 1명으로 지정
내습 10분 전·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문자 발송(2차) - 현장 대피 안내요원 및 현장인원 전원 대피
내습 직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문자 발송(3차) - 대피안내요원들의 대피주민 신원 확인 및 대피상황 확인

지진해일 주민 대피 흐름도



※ 긴급대피장소까지의 이동거리는 10분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신속한 대피 추진

① 지진발생

- ⇒ 동해북동부 해역(일본 서쪽해역 포함)에서 지진발생
- 기상청에서 관측, 분석, 판단 등 발생부터 지진해일 특보까지

② 특보발령(기상청)

- ⇒ 긴급재난문자 송출, 지진해일 발생여부 및 예상도착시간, 예상파고 발표
- ⇒ 지진해일 특보 발령과 동시에 해당 시·군·구에 통보

《기상청 지진업무규정(제5조)지진해일특보》

- ◇ 지진해일 주의보 : 동해안에서 규모 6.0이상 지진으로 파고 0.5~1.0m가 예상될 때
- ◇ 지진해일 경 보 : 동해안에서 규모 6.0이상 지진으로 파고 1.0m이상이 예상될 때

③ 대피명령 발령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통제단장

※ 대피명령 위반 시 발령권자(지역통제단장 제외) 과태료 부과

④ 상황전파 및 주민대피(특보발령 후 2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 중대본 비상체제 가동, 재난방송 매체를 활용한 경보발령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 기상청으로부터 지진해일 특보 접수
- ⇒ 해당지역 경보사이렌 발령 및 대피안내방송실시
- ⇒ 사전대피계획에 따라 신속히 주민 대피 실시
- ⇒ 지역본부 상황실 비상체제 가동

⑤ 특보해제(기상청)

- ⇒ 대피명령 해제, 피해 발생 시 구조·구급·의료·복구 실시 등

지진해일지구 현황(13개지구 28개소)

지구명		대 피 장 소	상세장소	읍면동
연번	13개지구	28개소		9개소
1	강문지구	강릉고등학교 체육관	강릉시 강릉대로 587번길 68	초당동
		강릉교회	강릉시 해안로 333	
2	남항진지구	세인트컨벤션웨딩홀	강릉시 공항길 127번길 5-3	성덕동
3	사천뒷불지구	장구바위 야산	강릉시 진리해변길 103	사천면
		강릉성결교회 부설 진리수양관 공터	강릉시 손맞이길 100-15	
4	강릉항지구	송정해변 신도브레뉴 아파트	강릉시 경강로 2539번길 22	송정동
		죽도봉	강릉시 견소동 11-1	
5	영진항지구	육군2191부대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137	연곡면
6	정동지구	고성산	강릉시 정동진리 267-4	강동면
		정동초등학교 체육관	강릉시 강동면 헌화로 1055	
		바다부채길 대형버스 주차장	강릉시 강동면 헌화로 923	
7	주문진 해변지구	소돌휴게소 주차장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북로 228	주문진읍
		우일 아파트 야산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산 96-1	
8	경포지구	경포산장콘도 공터	강릉시 하남길 345-18	경포동
		씨마크호텔	강릉시 해안로 406번길 2	
		현대아파트 앞 야산	강릉시 저동 산 10	
9	동덕지구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주차장	강릉시 사천면 해안로 1166	연곡면
10	심곡지구	곰두리연수원 주차장	강릉시 강동면 헌화로 740-40	강동면
11	안인지구	봉화산	강릉시 강동면 갯목길 38-1	강동면
		안인천주교회 주차장	강릉시 강동면 울곡로 1867-20	
		강인교회 주차장	강릉시 강동면 울곡로 1925-25	
		하시동2리 마을회관	강릉시 강동면 원장봉길 30-8	
12	옥계지구	옥계역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100	옥계면
		한국여성수련원	강릉시 옥계면 금진솔밭길 148-19	
		기마봉 야산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산 96	
13	주문진항지구	주영초등학교	강릉시 주문진읍 약수동길 15-12	주문진읍
		주문진감리교회 주차장	강릉시 주문진읍 항구로 43	
		주문진성당 주차장	강릉시 주문진읍 교향안길 51	

대피담당자(안내요원) 행동요령

재해약자에 대한 대피담당자 행동요령

- 대피명령 접수상태 유지
- 대피로, 대피장소 사전답사 및 숙지
- 재해별 행동요령 사전숙지로 상황별 신속 대처
- 대피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병원 등으로 응급수송 조치
- 노약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
- 대피발생시 재해약자에게 크로스넷을 이용, 재해약자 대피 차량 주차지점 알림
- 거동불편자는 입구까지 보호자가 이동후 재해약자 보호 차량에 보호자와 함께 승차후 대피장소로 이동
- 정전 등을 대비하여 후레쉬 등을 사전 준비

대피 안내요원 행동요령

- 대피명령 시달 시 신속한 상황접수 및 전파
- 대피로, 대피장소 사전답사 및 숙지
- 재난별 행동요령 사전숙지로 상황별로 신속대처
- 주민이 한꺼번에 출입구로 몰려들지 않도록 질서유지
- 주민이 당황하지 않도록 침착하면서도 신속한 유도
- 복도, 계단 등에 장애물 제거로 대피가 원활 유도
- 주민간 서로 협력하면서 대피토록 유도
- 대피자 중 노약자, 환자 등이 있는 경우 병원이송 조치

지진해일 국민행동요령

지진해일 발생 시 행동요령

- 내가 있는 지역이 지진해일의 위험이 있는 지역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 해안가에 있을 때 지진을 느꼈다면 곧 지진해일이 올 수도 있으니 빨리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합니다.
- 해안에서 지진을 느끼거나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지진해일 긴급 대피장소나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피할 시간이 없다면 주변 튼튼한 건물의 3층 이상으로 대피합니다.
- 지진해일이 오기 전 해안의 바닷물이 갑자기 빠져나가거나, 기차와 같은 큰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때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지진해일은 지진과 마찬가지로 한 번의 큰 파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 될 때까지 낮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진해일 내습 시 선박 위에 있다면

- 대양에서는 해일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해안 부근에서 크게 증폭되므로 자신이 만일 대양에 있고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었거나 이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항구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 항만, 포구 등에 정박해 있거나,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지진해일 발생 여부를 인지한 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선박을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시킵니다.
- 지진해일이 내습하면 항만 등에서 그 파고는 거대해지고 유속이 급격하게 증가 하므로 선박의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선박에 대한 조치가 끝난 후에 자신이 육지에 있다면 동료들과 함께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 합니다.

업무별 행동요령

대피안내요원

- 경보 발령 시 담당지역내 방송이 가능한 앰프시설 등으로 신속히 이동
- ※ 외부출장 등으로 신속한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대피안내요원에게 신속히 연락조치(대피안내요원은 반드시 지역별 3인 이상 지정)
- 마을회관, 동사무소 및 관광지 앰프시설 등을 이용하여 3회 이상 방송 실시
 - 방송시 대피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보(ex, 5층 이상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등)를 제공하고, 지진해일 제1파 도착이후 해일이 반복·지속되어 내습함을 반드시 주지시킬 것
 -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주민 및 관광객에게 대피 시 차량 이동을 자제토록 요청할 것
 - 관광지의 경우 영어·중국어 등 최소한 2개국 이상의 외국어로 미리 녹음된 테이프 등을 활용하여 1회 이상 방송 실시
- 지진해일 예·경보 사각지대,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성기 설치차량 등을 이용해 1회 이상 순회하며 주민·관광객 대피 유도
 -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재해정보 전달이 어려운 지하의 다중이용시설 및 주거지 등은 철저히 대피 유도
 - 주민·관광객 대피유도 시 지역내 긴급대피장소를 철저히 주지시킬 것
 - 사전에 담당지역내 지하시설, 임시대피 가능지역, 인구밀집지역, 예·경보 사각지역 등 현장여건을 미리 숙지하여 유사시 현장대응력을 높일 것
- 침수지역과 긴급대피장소 사이 대피로 중간지점에서 주민대피 유도
- 긴급대피장소로 이동 후 현장지휘소 구성, 재난종합상황실과 지속적으로 상황유지 및 구호 요청 등

재해약자 대피안내요원

- 특보발령 시 신속히 재해약자 거주지로 이동
- 재해약자를 신속히 차량 및 도보를 이용하여 긴급대피장소로 이동
 - 재해약자 이동시 반드시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재해약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가급적 이웃주민 지정)
- 긴급대피장소 이동 후 재해약자에게 후송조치 등의 추가조치가 필요할 경우 현장 자원봉사자에게 후송에 필요한 추가조치사항을 인계하고 즉시 위험지역으로 이동
- 지진해일 예·경보 사각지대,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성기 설치 차량 등을 이용해 1회 이상 순회하며 주민·관광객 대피 유도
 -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재해정보 전달이 어려운 지하의 다중이용시설, 주거지 등은 철저히 대피 유도
 - 사전에 담당지역내 지하시설, 임시대피 가능지역, 인구밀집지역, 예·경보 사각지역 등 현장여건을 미리 숙지하여 유사시 현장대응력을 높일 것
 - 주민·관광객 대피유도 시 지역내 긴급대피장소를 철저히 주지시킬 것
- 긴급대피장소로 이동 후 현장지휘소 구성, 재난종합상황실과 지속적으로 상황유지 및 구호 요청 등

읍면동사무소 대피안내요원

- 특보발령 시 신속히 읍·면·동사무소로 이동
- 관할지역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연락체계 구축 후 상황대기
- 구호·구조 요청 접수시 관할지역내 유관기관에 신속히 연락
 - 읍·면·동사무소가 침수범위이외 지역에 위치할 경우 상황 종료시(특보발령 후 약 24시간)까지 상황유지
 - 읍·면·동사무소가 침수범위내 위치할 경우 읍면 대표전화를 개인휴대폰으로 착신 전환 후 현장지휘소로 이동

시·도청 재난상황실 근무자

- 특보발령 수신
- 상황전파
 - 크로샷, SMS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 상황전파
 - 재난 예·경보시스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등을 활용한 상황전파
 - 도 민방위경보통제소 위험지역내 예·경보 발령 협조
 - 지역방송사에 재난방송 실시 요청
- 유관기관에 대한 상황전파 및 업무협조 요청
 - 경찰, 소방, 지방해양청, 해양경찰 및 기타 비상연락대상 유관기관에 대한 상황전파 확인, 기타 협조요청
- 해당부서의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브리핑 실시 지원
- 지진 및 지진해일 상황관리 매뉴얼을 활용, 상황관리

야간대피시 고려사항

- 사전 안내 및 홍보방송 실시
 - 위험요인 증대시 야간에라도 대피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 하라는 홍보방송 실시
 - 현지에서 사용할 반사조끼, 후레쉬, 무전기, 대피수첩 등 사전 배포
 - ※ 방송 차량, 마을앰프, 전화(대피담당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
- 대피 유도시
 - 거동 불편자, 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재해약자는 최우선 대피
 - ※ 사전 지정된 재해약자 대피안내요원 활용, 재해약자 대피담당자 지정이 안 된 지역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최우선 대피시키도록 조치
 - 대피로 중간에서는 방향 유도 안내요원 배치(경광봉 휴대)
 - 도보 대피자들이 긴급대피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피장소 입구에 조명을 설치하거나 차량 불빛 등을 이용하여 위치 안내
 - ※ 필요시 비상발전기 등을 활용한 조명시설 설치

3 해수욕장 통신지원(정보통신과)

1 추진개요

- 추진방향: 최적의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 경포해수욕장 등 10개소
- 주요내용: 통신 및 전산장비 지원(전화, 인터넷, Fax, PC 등)

2 세부추진계획

- 통신장비설치: 2024. 6. 28.까지 설치 완료
 - 설치장소: 관리본부 등
 - 설치내용: 전화 20개, 팩스 2대, 인터넷 7회선, 무전기 22대(관광정책과 보유)
- 통신지원반 운영: 2024. 6. 17. ~ 8. 18.
 - 운영인력: 4명
 - 지원사항: 통신시설(인터넷, 전화), 전산장비(PC 등 사무기기) 설치 및 관리
- 해수욕장 임시전화번호부 발간
 - 해변별 임시전화번호 부여 및 안내

3 통신 및 전산장비 상세 내역

- 관리본부·행정봉사실 등 설치장소 최종 확정 후 설치 및 조정

구 분		회선수 /개수	설 치 장 소	비고
통신장비		51		23년 기준
전화 (20)	경포	8	관리본부(3),소방서(1),보건소(1),해병(1), 인명구조(1),교통관리(1), 환동해특수대응단(1) 경찰기동대(1)	행정망사용
	주문진	4	행정(2),소방서(1),보건소(1)	
	기타	8	옥계,정동진,송정,안목,사천진,사근진,강문,남항진	

구 분		회선수 /개수	설 치 장 소	비고
인터넷 (7)	경포	1	관리본부(행정망전용 인터넷 1)	행정망사용
	주문진	1	관리본부(1)	
	옥계	1	관리본부(1)	
	사천진	1	관리본부(1)	
	연곡	1	관리본부(1)	
	정동진	1	관리본부(1)	
	남항진	1	관리본부(1)	
무전기 (22)	경포	22	수상안전요원용(22) (관광정책과 보유분)	
전산장비		13		
컴퓨터 (13)	경포	7	관리본부(7)	
	주문진	1	관리본부(1)	
	옥계	1	관리본부(1)	
	사천진	1	관리본부(1)	
	연곡	1	관리본부(1)	
	정동진	1	관리본부(1)	
	남항진	1	관리본부(1)	

① 추진개요

-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해수욕장 인근의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광·피서를 즐길 수 있는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② 세부추진계획

- 물가대책 상황실 설치 운영
 - 물가 모니터링 요원 운영, 물가동향 조사 및 물가정보 공개(주 1회)
- ※ 강원물가정보망(<https://cpn.provin.gangwon.kr/gwcpn>) 및 강릉시 누리집 게시
 - 물가 안정 지도·점검반 편성 및 운영
 - 바가지요금 및 부당요금 징수 행위 민원 접수 및 처리
- ※ 소비자상담센터 및 관련 부서·기관 연계
- 물가안정 점검반 편성
 - 공무원·소비자단체 합동점검반 구성
 - 외식업·숙박업 영업장 등 대상 요금 과다인상, 부당요금 징수 등 불공정 상행위 근절 지도,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 실시
-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1회 이상 실시
 - 판매자 및 소비자의 물가안정 동참 유도
 - 바가지 요금 등 부당요금 청구 방지 유도
 - 물가안정, 가격표시제, 착한가격업소, 강릉페이 등 홍보(홍보물 배포)
 - 한국여성소비자연합강릉지회, 물가모니터요원, 소상공인연합회 등 합동

1 추진목적

- 여름철 해수욕장 기간 도립공원 내 야영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립공원 환경 조성

2 추진개요

- 추진방향: 안전하고 쾌적한 경포도립공원 환경 조성
- 사업대상: 경포도립공원(산책로·가시연습지, 순포습지·해변 송림 등)
- 주요내용: 반려동물·전동기 출입 단속, 취사·야영행위 단속

3 불법행위 지도 단속 추진계획

- 추진기간: 2024. 6. 24. ~ 8. 31.
- 단속구역: 경포도립 공원 내(경포호·가시연습지 일원)
- 단속인원: 11명(습지보전계 4, 공무원 2, 기간제 5)
※ 공무원 2명 수시, 기간제 5명 상시 운영
- 단속대상
 - 반려동물·전동스쿠터 출입행위, 상행위 및 야영·취사행위
 - 폭죽 등 화기물질 소지 및 불꽃놀이 행위

1 추진개요

- 해수욕장 기간 많은 피서객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교통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불법행위에 대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제공
- 운영기간: 2024. 6. 29.(토) ~ 8. 18.(일)
- 사업대상: 경포해수욕장 방문 차량
- 주요내용: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시설물 보수

2 세부추진계획

- 교통 유관 기관별 업무 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 (시 교통과) 해수욕장 주변 도로 불법주정차 관리 및 교통질서유지
 - (강릉경찰서) 교통통제 등 해수욕장 교통관리 전반
 - (모범운전자) 혼잡 교차로 교통관리 지원 및 수신호
-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 해수욕장 주변 노후 노면표시 정비
 - 교통표지판, 버스승강장, 시선유도봉 등 교통시설물 보수
 - 라바콘 등 통제 시설물 지원
 - 교통 유도 표지판 설치(관광정책과 제작)
- 사업용자동차 안전운행 교육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
 - 운수종사자 안전 운행 및 친절 교육 실시
 - 택시 승차 거부 등 불친절 행위
 -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경포권역)
 - 불법 구조 변경(배기 튜닝 등) 차량

○ 불법주정차 단속·견인반 운영

- 운영기간: 2024. 6. 29 ~ 8. 18. 평일 10시~21시 / 주말 별도 근무 명령
- 인원/장비: 단속 4명, 견인 1명 / 단속차량 2대, 견인차량 1대
- 주요구간: 경포, 안목, 사천 해수욕장 주변 혼잡 도로
- 내 용: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 방해 차량 견인 실시
- 견인장소: 안현동 868번지 (경포변영회 주차장)

○ 교통표지판 설치 장소

설치장소	수 량	표지판내용	규 격	비 고
인공폭포 삼거리	1개	진입금지	입간판 900×1800	
경포 스카이베이	1개			
중앙통로음수대 앞	1개	일방통행		
초당삼거리 외 6개소	7개	우회유도표지		

① 추진목적

- 피서철 기간 해수욕장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도로환경 제공

② 세부추진계획

- 운영기간: 2024. 6. 29. ~ 8. 18.
- 대상지역: 해수욕장 인근 도로
- 근무내용
 - 해수욕장 인근 도로 순찰, 노점상 계도 및 단속
 - 필요시 경찰서 및 보건소 합동 단속 진행
- 불법노점상 적발 시 단계별 처리
 - (1단계) 노점상 및 노상적치 행위 사전 계도 및 홍보실시, 관광객 이용자제 요청 및 불법노점상 자진철거 유도
 - (2단계) 노점상 밀집지역 집중단속 및 단속반 배치, 자진정비 안내장 배부 1회, 계고장 발부 1회
 - (3단계) 반복적·상습적 노점행위는 관련부서·경찰 합동단속 강제집행 (물품수거) 및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VII. 부 록

1 2023년 해수욕장별 피서객 현황

2 해수욕장 관련 법률

1

2023년 해수욕장별 피서객 현황

구 분		'23년 피서객수	'22년 피서객수	증감	비고
합 계		1,998,684	1,562,065	27%	
1	경포	1,417,604	1,066,122	32%	
2	강문	41,017	31,013	32%	
3	금진	13,147	-		'22년 미개장
4	등명	13,124	8,578	52%	
5	사근진	23,654	12,244	93%	
6	사천	14,835	3,051	486%	
7	사천진	21,265	4,708	451%	
8	송정	39,730	27,323	45%	
9	순긋	15,064	3,848	391%	
10	안목	97,235	95,803	1.45%	
11	안인	7,342	-	-	'22년 미개장
12	연곡	7,882	4,575	1.7	
13	영진	15,851	17,700	△11%	
14	옥계	8,848	7,190	23%	
15	정동진	49,588	34,456	43%	
16	주문진해변	202,018	241,025	△17%	
17	하평	10,480	2,595	403%	
18	남항진	-	-	-	'22~23년 미개장
19	도직	-	1,834	-	'23년 미개장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수욕장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기본 및 기능시설
 - 1) 백사장(모래, 자갈 등 토양의 재질에 상관없이 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을 할 수 있는 육역을 말한다)
 - 2) 산책로
 -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야영장, 공중이용통신시설, 차량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안전부표, 유영가능구역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안전시설
 - 5) 오수·폐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쓰레기집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 나. 지원시설
 - 1)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등 행정시설
 - 2) 체육시설
 - 3) 판매·대여시설
 - 다. 그 밖에 해수욕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해수욕장시설사업”이란 해수욕장시설을 신설·증설·개축·보수·복구 및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물놀이구역”이란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부표·안전선 등으로 구분되어지는 구역으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수상레저구역”이란 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관리청”이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해수욕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관리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소중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도록 할 것
2. 해수욕장은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모든 국민이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해수욕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해수욕장은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환경 및 시설을 유지·개선·복구·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해수욕장에서의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7. 24.>
②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수욕장의 지정 등

제6조(해수욕장의 지정) ① 관리청은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해수욕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제외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같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명칭·위치·주요시설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수욕장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그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연안침식, 지형의 변화 등으로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희귀생물의 서식지 보호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해수욕장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해수욕장의 현황조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지정, 지정의 변경, 해제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 해수욕장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주기·방법·내용,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수욕장 기본계획 등

제9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해수욕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 11. 19., 2017. 7. 2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10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과 해수욕장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3.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등 여건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수욕장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여건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2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리청에 통보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청은 지체 없이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통보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해수욕장 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③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해수욕장의 현황
2.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관할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4. 관할 해수욕장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할 해수욕장 관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5조(관리계획의 변경 등)** ① 관리청은 관할 해수욕장의 여건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르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 제17조(해수욕장의 구역)**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 이용이나 운영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 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나 해수욕장의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한다.

-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31.>
- ⑤ 관리청은 수탁자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 ⑥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절차·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 제20조(해수욕장협의회)** ①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해수욕장협의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둔다.
- ②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사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

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2.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3.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6.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7.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8.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10.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1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자갈·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12.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1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원상회복 등) ① 관리청은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설물 등의 제거 또는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또는 그 밖에 행위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2(설치·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등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는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제5장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제24조(안전관리지침)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고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안전관리조치 등) ①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조치”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안전관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장비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안전에 관한 정보의 내용·고지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2. 27.>

제26조(수상레저기구의 운용 등) ①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6. 10.>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이용 및 운용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물놀이구역에의 수상레저기구 출입금지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7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시설 중 해수면에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한 결과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비·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청의 정비·보수 등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청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시기·절차,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7.>

제28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등)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유해물질의 유입, 유해생물의 출현,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협의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게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해수면에서의 물놀이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제4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해제의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2. 27.>

제29조(환경관리지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지침의 적용범위, 고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수질관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관할 해수욕장의 수질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해수욕장의 수질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질의 조사·분석 결과 해당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이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해수욕장의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이용 금지 또는 제한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제4항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의 금지 또는 제한 해제의 사실공지에 관하여는 제28조제5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 수질의 조사·분석방법 및 조사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백사장 관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침식 등으로 훼손되어 해수욕장 경관을 저해하고 해수욕장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 모래 등을 보충하는 등 백사장의 복구·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백사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사장 토양질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점검결과를 주기적으로 관리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폐기물 등 관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폐기물 집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해수욕장이 쾌적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및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유해생물 관리) ① 관리청은 해파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생물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생물의 발생 및 이동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리청에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관리청은 유해생물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6.>

제6장 해수욕장시설사업

제34조(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 등을 허가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해수욕장시설의 관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에 따른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그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해수욕장시설사업의 시행 등) ① 해수욕장시설사업(이하 “시설사업”이라 한다)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4. 공익을 위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그 밖에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③ 관리청이 아닌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거나 설치한 해수욕장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관리청에 귀속된다. 다만, 관리청이 아닌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전용(專用)할 목적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수욕장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리청의 승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사업은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승인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37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7., 2020. 3. 31., 2022. 12. 27., 2023. 5. 16.>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2.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3.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4.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②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16.>

제7장 해수욕장의 평가 등

- 제39조(해수욕장의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시설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상 해수욕장을 선정하고, 해당 해수욕장의 관리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 ③ 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평가의 대상,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해수욕장평가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1.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수욕장평가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31.>
- ③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31.>

제8장 보칙

제41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보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의 이용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0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1. 제27조제4항에 따른 운영 정지 기간에 해수욕장시설을 운영한 자
2. 제31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모래 등을 백사장의 복구·복원에 사용한 자
3.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

제45조(벌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또는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3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수탁자로 지정받은 자
 - 1의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한 자
 2.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9807호, 2023. 10. 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
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수욕장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81호, 2024. 4. 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53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및 환경 기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환경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환경 기준을 말한다.

제3조(해수욕장의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별표 1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해수욕장의 수역이 별표 1 제2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군사작전, 군사시설 또는 군사기밀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4. 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시설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수욕장의 여건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수욕장 이용자 수가 3년 연속으로 직전 연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 연안의 침식(浸蝕), 지형의 변화, 자연재해의 빈발 또는 해수욕장 수역의 수온 상승 등 해수욕장 주변 자연환경 및 해수욕장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수욕장과 해수욕장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 중 단순한 통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의 평가 및 지원 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7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할 해수욕장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관할 해수욕장에 대한 해수욕장시설사업(이하 “시설사업”이라 한다)의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업무로 한다. <개정 2019. 6. 25.>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 1의2. 법 제2조제2호가목4)에 따른 안전시설
2. 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
- 2의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
3.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대여시설
4.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지역변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9. 1., 2018. 10. 2.>

1.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마을회 등 지역변영회
2. 해당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9조(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5. 9. 1., 2017. 6. 27., 2017. 7. 26.>

1.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또는 해양수산물출장소장을 포함한다)
2.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3.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기상대장
4.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5.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보건소장
6. 해당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

제10조(제거 대상 물건)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야영용품
2. 취사용품
3.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본조신설 2023. 6. 27.]

제10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① 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물건등이 있던 곳에 물건등의 품명·수량, 제거 사실·일시 및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② 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제거한 물건등을 관리청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물건등의 품명, 수량, 제거 장소, 제거 일시, 제거 이유 및 보관 장소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③ 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동안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1. 물건등의 품명·수량, 제거 장소, 제거 일시 및 제거 이유
2. 물건등의 보관 장소

3. 물건등의 제거·운반·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내고 물건등을 찾아갈 것

④ 관리청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그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 중 하나 이상의 매체와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에 의한 공고는 이를 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관리청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을 매각할 수 있다.

⑥ 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물건등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건등을 폐기할 수 있다.

⑦ 관리청은 물건등을 제5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제6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하여 생긴 수익에서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제거·운반·보관·처리 등에 든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 충당하고,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반환요구가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귀속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10조의3(물건등의 반환) 관리청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물건등을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남은 금액을 그 매각 또는 폐기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11조(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한 해수욕장에 적용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관리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경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 2017. 7. 26.>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침을 통보받은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의 대상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시기·절차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7. 26.>

② 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즉시 시설의 정비·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를 완료한 후 조치 내용을 관리청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13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유해물질의 유입, 유해생물의 출현,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9. 1., 2024. 2. 6.>

1.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이하 “유해해양생물”이라 한다)이 출현하였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유해해양생물 외에 상어 등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양생물이 출현하였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상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상(氣象)현상으로 기상이 악화되고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를 한 경우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유행하고 있거나 발생·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이안류(離岸流) 등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4조(환경관리지침)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지침”이라 한다)의 적용범위 및 고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는 “환경관리”로,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안전관리지침”은 각각 “환경관리지침”으로 본다. <개정 2015. 9. 1., 2017. 7. 26.>

제15조(수질관리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이란 별표 1 제2호나목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 전단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해수욕장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생활하수 등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汚染源)으로 인하여 해수욕장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6조(백사장 관리)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이란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백사장 토양질에 대한 점검체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구축·운영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대상지역 중 백사장에 대한 침식실태 및 토양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조사결과를 지역별·지형별 및 연도별 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3.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1호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2호에 따른 관리 자료를 관리청에 통보할 것

제17조(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3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말한다. <개정 2019. 6. 25.>

② 법 제36조제2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 6. 25.>

1.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3.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시설사업 대상 해수욕장을 어촌계의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제19조(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법 제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수욕장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6. 25.>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중 탈의시설·샤워시설 및 차양시설
- 1의2.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른 체육시설
2.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대여시설
3.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0조(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업을 하려는 자가 수립하는 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사업을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시설사업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시설사업의 명칭 및 종류
3. 시설사업의 목적
4. 시설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시설사업의 특징 및 효과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사업 등) ①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9. 1.>

1.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이동식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시설사업
 2. 기존의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증설·개축·보수·복구 및 복원 사업으로서 해당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사업. 다만, 해당 사업에 드는 사업비의 누적된 합이 해당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②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2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의2(지원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수욕장을 지원 대상 해수욕장으로 선정한다.

1.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의 개선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6. 25.]

제22조(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4. 10.>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2018. 4. 10., 2024. 4. 30.>

1.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소속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또는 해양관광·해양레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 4. 30.>

④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

경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소속 공무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7. 26.>

⑥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평가위원회 개최 사실과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제22조의2(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평가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선조치요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6. 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분석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 4. 30.>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34481호, 2024. 4. 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수욕장의 시설 및 환경 기준(제2조 관련)

1. 시설기준

가. 백사장

- 1) 전년도의 평균 해면(海面) 기준으로 길이 100미터 이상, 폭 20미터 이상일 것(전년도의 해당 해수욕장 이용객이 3만 명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 2) 해수욕장 이용객의 신체상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한 물질이 없을 것

나.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다. 탈의시설 및 샤워시설: 물놀이를 위한 탈의시설 및 샤워시설이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탈의시설 및 샤워시설은 임시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2. 환경기준

가. 백사장: 백사장의 토양이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역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1) 만조 시 기준으로 백사장의 길이 방향의 가운데 지점의 해수면 시작점부터 수심 1.5미터 이하의 해수면이 10미터 이상일 것
- 2) 해수욕장 이용객의 물놀이를 방해하는 쓰레기 등 부유물(浮遊物), 해조류 및 유해해양생물 등이 없을 것
- 3) 수역의 수질은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試料) 10개 중 6개 이상의 시료가,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 6개 중 4개 이상의 시료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가) 장구균(Enterococci): 100CFU/100mL 이하 또는 100MPN/100mL 이하

나) 대장균(E.coli): 500CFU/100mL 이하 또는 500MPN/100mL 이하

비고

1. 백사장의 토양기준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가.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백사장을 길이 방향으로 2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1개씩 채취한 시료(모두 3개의 시료)를 혼합

한 후 토양의 질을 측정한다.

나.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백사장을 길이 방향으로 4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1개씩 채취한 시료(모두 5개의 시료)를 혼합한 후 토양의 질을 측정한다.

2. 수역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다음의 방법으로 채취한다.

가. 백사장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백사장의 길이 방향으로 해수면을 2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2개씩 시료를 채취한다.

나. 백사장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백사장의 길이 방향으로 해수면을 4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2개씩 시료를 채취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료는 수심이 1미터인 지점의 수면에서 아래쪽으로 수직 30센티미터인 지점에서 채취한다.

안전점검의 대상·시기·절차(제12조제1항 관련)

1. 관리청이 실시하는 안전점검

안전점검 대상 시설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 절차
백사장	해수욕장 개장 1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매일 1회 이상	
이용객 편의시설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2주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2일 전까지 시설운영자에게 안전점검실시 계획 통보
안전시설	해수욕장 개장 2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환경시설	해수욕장 개장 2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행정시설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2주에 1회 이상	
체육시설	해수욕장 개장 1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2일 전까지 시설운영자에게 안전점검실시 계획 통보
판매·대여시설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2주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2일 전까지 시설운영자에게 안전점검실시 계획 통보
해양레저시설 및 그 부대시설	해수욕장 개장 1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2일 전까지 시설운영자에게 안전점검실시 계획 통보
문화·체험시설	해수욕장 개장 1주 전부터 개장기간 종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2일 전까지 시설운영자에게 안전점검실시 계획 통보

2.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실시하는 안전점검

안전점검 대상 시설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 절차
안전시설(해수면에 설치된 안전시설만 해당한다)	해수욕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기상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보(대설, 황사, 건조, 한파, 폭염 및 안개 특보는 제외한다)가 해제된 경우 해당 특보의 대상 지역에 위치한 해수욕장의 관리청은 제1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시설에 대하여 즉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17조 관련)

1. 기본 및 기능시설

가. 백사장

- 1) 설치기준: 별표 1 제1호가목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백사장을 확보할 것
- 2) 관리기준
 - 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동안 매일 개장시간 전 또는 개장시간 후에 백사장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고,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나) 해수욕장 개장 전 1개월 이내에 시료를 1회 이상 채취하여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환경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것

나. 산책로

- 1) 설치기준: 해수욕장의 지형 및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 2) 관리기준: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즉시 제거할 것

다. 이용객 편의시설

1) 샤워시설

- 가) 설치기준: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간단한 샤워를 하거나 손발을 씻을 수 있는 노천 샤워장이나 세족(洗足)장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관리기준: 개장기간 동안 매일 샤워시설의 청결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할 것

2) 화장실

- 가) 설치기준: 해당 해수욕장의 백사장 길이 및 연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을 설치할 것
- 나) 관리기준
 - (1) 개장기간 중 매일 화장실 청결 상태 및 화장지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2) 신속한 화장실 유지·보수를 위하여 화장실 관리자의 연락처를 해수욕장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 (3) 관리청은 해수욕장 주변 상가의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하여 계도하는 등 해수욕장 이용객의 화장실 이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삭제 <2018. 4. 10.>

라. 안전시설

1)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수상오토바이 및 구명튜브

가) 설치기준: 인명구조선(응급구조사 및 산소호흡기 등 필요한 인력 및 장비가 갖추어진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구명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것으로서 순찰 및 구명용 수상오토바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갖추고, 2)에 따른 감시탑마다 구명튜브를 갖추는 것

- (1) 최근 3년간 평균 이용객 수가 100만명 이상인 해수욕장: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의 합이 6대 이상일 것
- (2) 최근 3년간 평균 이용객 수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해수욕장: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의 합이 4대 이상일 것
- (3) 최근 3년간 평균 이용객 수가 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인 해수욕장: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의 합이 3대 이상일 것
- (4) 최근 3년간 평균 이용객 수가 5만명 미만인 해수욕장: 구명보트 또는 수상오토바이가 1대 이상일 것

나) 관리기준: 관리청은 관할 소방서, 해양경찰서 및 민간해양구조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명구조 장비의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

2) 감시탑

가) 설치기준

- (1) 해수욕장 이용객들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백사장의 길이와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를 설치할 것
- (2) 감시탑의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 감시탑에 있는 안전요원이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관리기준: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감시탑에 감

시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하여 구명보트 등으로 물놀이구역을 순회하는 등 감시탑과 연계한 다양한 해상안전 감시 체제를 구축할 것

3) 물놀이구역 안전시설

가) 설치기준

- (1) 물놀이구역에는 물놀이구역임을 표시하는 물놀이구역 부표를 설치할 것
- (2) 물놀이구역이나 물놀이구역 인근 해저에 급경사면, 웅덩이 또는 암초 등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요소가 있는 경우 해수욕장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안전부표 또는 경고판 등을 설치할 것
- (3) 물놀이구역 외의 구역에 수상레저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로를 따로 설치할 것

나) 관리기준

- (1)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해안의 경우에는 만조시간과 간조시간 등 해수욕에 필요한 정보를 공지할 것
- (2)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이 인접한 경우 물놀이구역 부표와 수상레저구역 사이에 10 ~ 20미터의 안전구역(Safety Zone)을 둘 것

마. 환경시설

1) 오수·폐수 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 가) 설치기준: 샤워시설, 화장실 또는 판매·대여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수·폐수가 정화처리 없이 바다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 나) 관리기준: 해수욕장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오염원들을 조사하고, 오수·폐수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

2) 쓰레기집하·처리시설

- 가) 설치기준: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백사장 길이, 연 이용객 수 및 쓰레기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분리수거식 쓰레기집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 나) 관리기준
 - (1)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이용객 수 및 쓰레기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기로 개장기간 전후에 백사장 청소를 실시할 것
 - (2) 해수욕장 또는 해수욕장 인근에 설치한 쓰레기집하·처리시설이 위

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쓰레기집하·처리시설로 인하여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2. 지원시설

가. 관리사무소

- 1) 해수욕장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관할 경찰서, 해양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의 안전·치안요원들이 합동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는 임시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 2) 최상층(또는 옥상)에는 해수욕장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할 것

나. 진료시설

- 1)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2) 해수욕장 이용객이 진료시설임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다. 체육시설

- 1) 백사장에 비치발리볼 장(場)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백사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가급적 임시 시설물로 설치할 것
- 2) 체육시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 축조 및 시설물 설치 시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

라. 판매·대여시설: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쾌적한 해수욕을 위하여 적정한 수와 규모의 판매·대여시설을 설치할 것

3. 그 밖의 시설

가. 해수풀(pool), 다이빙대,海中전망대,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등 레저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해수욕장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해상에 설치된 레저시설 등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물놀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공연장, 야외극장, 전시장 등 문화시설은 이용객의 접근성, 이용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결정할 것

다. 체험장 등 체험시설은 해양 관련 이미지 제고,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양 및 해양안전 관련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

라. 잔디밭, 방포럼, 분수대 등 조경시설은 해수욕장 및 해안의 미관 및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시설을 배치하고 관리할 것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금액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3회 초과하여 받은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수탁자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1호	300	400	500
나.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 제1호의2	300	400	500
다.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2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10	10	10
2)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10	10	10
3) 법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10	10	10
4) 법 제2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해수욕장의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법 제47조 제3항	5	5	5
5) 법 제2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10	10	10
6) 법 제22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간 경우	법 제47조 제3항	10	10	10
7) 법 제22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킨 경우	법 제47조 제3항	5	5	5

8) 법 제2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의 허가 없이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아목의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5	5	5
9) 법 제22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10만원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10) 법 제22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5	5	5
11) 법 제2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자갈·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5	5	5
12) 법 제22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여 해수욕장 시설을 훼손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5	5	5
13) 법 제22조제1항제13호를 위반하여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라.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 또는 운용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	60	80	100
마.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200	300	400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릉시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을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자”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업무 일부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위탁료”란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제2장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제3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일 15일 전까지 강릉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게재하고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 및 기간, 시간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업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정한 사용료의 부과·징수
3.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의 고유 목적을 위해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및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리·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 이용객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해수욕장 청결 유지

2. 사용료의 준수 및 효율적인 징수 대책 마련
3. 시설사용료 안내판을 시설 내에 게시하고 게시내용 준수
4.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5. 위탁기간 만료 시 시설물 원상회복
6. 해수욕장 위탁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재정사항이 포함된 결산서 및 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제출
7. 시장이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의 성실한 이행
8.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한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철저한 이행 및 이용객들의 위반행위 계도
9. 위탁받은 관리 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 금지

제8조(수탁자의 지정해지)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영 제8조에 따라 수탁받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
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수탁자의 지정제한)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 또는 지정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탁자의 선정 또는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수탁자 지정이 해지된 경우: 2년간 제한
2. 수탁자가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1년간 제한
3. 위탁료와 수탁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을 납부기한 내 납입하지 아니하고 3회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1년간 제한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1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제16조에 따른 강릉시 해수욕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
- ③ 사용료에 관한 안내표지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이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 2를 따른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2. 시설이용 예정일 전 및 당일 예약자가 취소한 경우

제12조(해수욕장시설 위탁료) ① 해수욕장 시설에 대한 위탁료는 제16조에 따른 강릉시 해수욕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② 위탁료는 시설물 사용료와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3조(이용자의 책임) ① 시설 사용 중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22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47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 4와 같다.

제15조(준수사항 미준수에 대한 조치) 시장이 제14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해수욕장협의회

제1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강릉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해수욕장 지정·변경·해지
2. 수탁자의 지정·해지·제한
3.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위탁료
4. 그 밖에 시장이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수욕장 업무 담당국장과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2. 강릉경찰서장
3. 동해해양경찰서장
4. 속초해양경찰서장
5. 강원지방기상청장
6. 강릉소방서장
7. 소비자, 물가 관련 단체의 장
8. 해수욕장 운영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9.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단체(법인·단체나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단체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3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수욕장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릉시 해수욕장협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강릉시 해수욕장협의회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강릉시 해수욕장협의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해수욕장 시설사용 요금표(제11조 관련)

시설명칭	구분	기준	사용료
주차장	이륜차	2시간 까지	500원
		4시간 까지	750원
		8시간 까지	1,000원
		12시간 까지	1,250원
		24시간 까지	1,500원
	경승용차 (배기량800cc, 길이3.5m, 너비1.5m, 높이2.0m)	2시간 까지	1,000원
		4시간 까지	1,500원
		8시간 까지	2,000원
		12시간 까지	3,000원
		24시간 까지	4,000원
	승용차, 소형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시간 까지	2,000원
		4시간 까지	3,000원
		8시간 까지	4,000원
		12시간 까지	6,000원
		24시간 까지	8,000원
	버스, 중대형 화물차 (16인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차)	2시간 까지	4,000원
		4시간 까지	6,000원
		8시간 까지	8,000원
		12시간 까지	12,000원
		24시간 까지	16,000원
샤워장(일반)	어른, 청소년(중학생 이상)	1회	3,000원
	어린이(초등학생 이하)	1회	2,000원
샤워장(온수)	어른, 청소년(중학생 이상)	1회	3,500원
	어린이(초등학생 이하)	1회	2,500원

시설명칭	구분	기준	사용료
차양시설 등	파라솔	1회	10,000원
	돛자리(판매)	1개	5,000원
	L형 텐트	1회	15,000원
	텐트 (사면 개방형, 6㎡ 이하)	1회	20,000원
	몽골텐트(평상포함)	1회	50,000원
	튜브(소형)	1회	5,000원
	튜브(대형)	1회	8,000원
	구멍조끼(소형)	1회	5,000원
	구멍조끼(대형)	1회	8,000원
	테이블(4인용 이하)	1회	30,000원
	테이블(6인용 이상)	1회	40,000원
	평상	1회	30,000원
	선베드(sun bed)	1회	30,000원
	해먹	1회	30,000원
물품보관소	보관함 1개	1회	3,000원
야영장	노지	1일	25,000원
	데크	1일	40,000원
	전기사용료	1일	3,000원
기타 그 밖의 물품		강릉시 해수욕장협의회에서 결정	

※ 테이블 및 평상, 선베드, 해먹은 각각 파라솔 사용료가 포함된 가격

※ 해수욕장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 금액 이하로 사용료 징수 가능